입법 토론회

공직자윤리법 전부개정안 마련을 위한 원탁토론

일시 | 2013년 5월 27일(월)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실
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실
한국투명성기구(TI)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프로그램

10:00	축사	전병헌 국회의원(민주당 원내대표, 동작갑)
		유기준 국회의원(새누리당 부산 서구,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최 인사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당 중랑갑)
		진선미 국회의원 (민주당 비례)
사회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상임이사
10:20	**발제 1**	**공직자의 윤리 확보와 이해충돌의 방지**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10:35	**발제 2**	**참여연대 2013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제안**
		장유식 변호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10:50	지정토론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희우 전국공무원노조 정책연구소장
		김민재 안전행정부 공직윤리담당관
		안준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장
11:30	종합토론	
11:50	폐회	

목차

인사말 5

발제 1
공직자의 윤리 확보와 이해충돌의 방지 / 윤태범 9

발제 2
참여연대 2013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제안 / 장유식 47

토론 1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대한 토론문 / 임지봉 137

토론 2
공직자는 국민의 공무원이어야 한다 / 이희우 146

토론 3 현장 토론 / 김민재

토론 4
공직부패의 사전 차단을 위한「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을 중심으로 / 안준호 157

*별첨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 퇴직후취업제한제도운영실태 보고서 2012 (2012. 10. 18 발간)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 주식백지신탁제 시행 7년 모니터 보고서 (2012. 11. 28 발간)

인사말 1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중랑갑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오늘 **「공직자윤리법 전부개정안 마련을 위한 원탁토론회」**에 참여하여 사회를 맡아주신 유한범 한국투명성 기구 상임이사님과 발제를 맡아주신 윤태범 교수님, 장유식 변호사님 그리고 토론에 참석해주신 여러 토론자분들과 바쁘신 와중에서도 함께 해주신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님과 유기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공직자윤리법에 도덕성과 관련된 공직자의 윤리를 검증할 수 있는 규정과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하에 그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에서 오랫동안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공직자윤리법 전부개정안을 제안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저는 19대국회 1년 동안 현병철 인권위원장 후보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를 비롯해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의 사법부 고위공직자들의 인사청문회를 수차례 진행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청문회가 거듭될수록 고위공직자들의 '세금탈루', '부동산 관련 의혹', '전관예우', '병역면제의혹', '특정업무경비 사적이용' 등 일일이 다 열거할 수도 없을 정도의 많은 의혹들이 쏟아져 나와 국민들을 분노와 허탈에 빠지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대통령의 청와대비서진 '묻지마 인사', '수첩인사''불통인사'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문 사건까지 드러나 국격의 추락마저 발생하였습니다.

이제 공직자의 도덕성과 윤리를 검증할 수 있는 규정과 시스템 마련은 더 늦출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4월 국회도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공직자의 청렴과 반부패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제가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 사개특위에서는 2차례에 걸쳐 고위공직자의 반부패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공청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퇴직 후 '취업제한', '백지신탁', '현직공무원 행위제한'에서부터 '대상 확대', '벌칙신설' 등 다양한 대안들이 제안되었습니다.

고위 공직자가 되면 뿌리치기 힘든 주위의 수많은 청탁과 유혹들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공정하고 도덕적이지 않은 사회적 '룰'때문에 고통 받는 수많은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다시 한 번 공직자 스스로 초심을 되새기고 투철한 소명의식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의 변화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뀔 때 비로소 제도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첫걸음으로 오늘, 진선미 의원님과 함께 **「공직자윤리법 전부개정안 마련을 위한 원탁토론회」**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참여연대가 제안한 「공직자윤리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어 공직자들의 윤리의식이 강화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바쁘신 와중에도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한 우리 모두의 고민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서영교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

인사말 2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국회의원 진선미입니다.

먼저, 본 토론회의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한국투명성기구, 전국공무원 노조 여러분들과 동료의원이신 서영교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공직자윤리법은 우리 사회 반부패 법제의 핵심법안입니다. 하지만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았듯이 현행 공직자윤리법으로는 전관예우나 불법로비 등의 공직자로써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제재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퇴직이후 업무관련성이 높은 기관, 기업체에게 일정한 대가를 받고 일을 하여도 이를 제대로 차단할 수 없게 되어, 공직자로써 지켜야 할 덕목의 기본조차 무너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사청문회를 경험하면서 공직자들의 도덕성을 바로 적립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도덕성에 대하여 많은 지적을 받은 후보자를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그대로 임명하였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결격사유로 지적해야 할 사항이 제도자체의 미비로 인하여 도덕적 비난 이상의 제재를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을 국민 여러분께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공직자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정리되었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내용이 축적되어 왔습니다. 또한, 많은 곳에서 공직자의 윤리성 강화를 위한 총제적인 제도변화의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 개최되는 오늘 본 토론회는 그 의미가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의 전면개정을 위한 본 토론회가 현행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직자의 윤리를 높이는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모아진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진선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발제 1

공직자의 윤리 확보와 이해충돌의 방지[1)]

공직윤리 제도발전에 비추어 본 현 시기 공직자윤리법 개정 의의

윤태범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Ⅰ. 서론

○ 최근 새 정부 출범과 관련하여 장관급 고위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등 자질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음, 이중 상당수는 고위 공직자로서 공직을 퇴직하여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기업 등으로 취업하여 단기간에 고소득을 올렸다가 다시 장관급 후보자로 복귀한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의 사례들임.

○ 이와 같은 이해충돌을 야기하는 퇴직후 취업 및 전관예우 등의 부정적 관행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며 오래된 구조적, 관행적 문제라고 할 수 있음. 이와 같이 퇴직후 벌어지는 이해충돌의 문제는 퇴직 공직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재직 중인 공직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공직자의 윤리 확보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임.

○ 또한 공직자의 부패나 윤리문제는 공직자 개인의 문제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며, 공공기관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 국민들의 정부는 물론 정책에 대해서

1) 서울대학교 정책지식센터(2013. 3. 11)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화 공청회(2013.5.7)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였음.

도 불신을 초래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음. 이로 인하여 정부는 또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정책홍보 등 추가적 비용을 지출하게 됨. 부패와 낮은 수준의 윤리가 단순히 규범적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음.

○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윤리(ethics)'는 '특정지역이나 조직에서 준수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람직한 가치'를 의미함. 그런데 공직자의 윤리는 일반적인 윤리와 구별됨. 즉 공직자(public servant)는 어원상 '다수를 위한 이익(즉 공익)을 유지, 보존하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직자의 윤리는 '다수를 위한 이익(즉 공익)을 유지, 보존하는 사람들(즉 공직자)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가치'로 정의될 수 있음. 따라서 공직자의 윤리는 기본적으로 선언적, 가치 지향적 내용으로 구성되지만, 어원상으로도 실천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내용도 동시에 지니고 있음. 따라서 공직윤리를 제고한다는 것은 현실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기대되는 가치를 사전적으로 정립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함.

○ 특히 공직자의 '부패(corruption)'는 윤리성이 배제된 가운데, '사적인 이익의 획득을 위하여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상 권한을 오남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부패는 낮은 수준의 윤리의 이면 혹은 그 결과라고 할 수 있음. 예방적 성격의 윤리와 비교하면 부패는 결과 지향적 의미를 갖고 있음.

○ 이렇게 공직자에 대해서 윤리를 강조하고 부패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직 혹은 공직자의 존립이나 정당성의 근거가 '국민'이라는 다수를 위한 직무의 공정한 수행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임. 즉 국민과 공직자의 관계는 법에 의한 계약적 관계로서도 설명되지만, 그 이전에 믿음, 즉 신탁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임. 공직자의 윤리가 국민의 기대수준 이상으로 확보되지 않으며 국민과 공직자간의 신탁관계는 존립할 수 없음.

○ 이와 같은 윤리와 부패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다양한 제도들을 활용하였는데, 이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공직자윤리법(1981)과 부패방지법(2002)[2]임.

2) 부패방지법은 2008년 국가청렴위원회가 국민고충초리위원회 등과 통합됨에 따라서 폐지되었고, 대

이중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이해충돌이나 퇴직후 취업제한과 관련한 법은 공직자윤리법임. 그런데 공직자윤리법은 이미 제정 된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한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하에서는 공직자의 윤리 확보 및 이해충돌의 방지라는 측면에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함.

Ⅱ. 국가 청렴성 제고의 필요성

1. 우리나라의 청렴성에 대한 낮은 국내외 평가

1) 사회적 자본 수준

○ 한 국가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인프라로서 사회적 자본이 강조되고 있음.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신뢰성에 기반하는 것으로서, 청렴성 제고는 사회적 자본 축적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런데 한국의 사회적 자본 축적은 아직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즉 한국의 사회적 자본 축적 수준은 OECD 국가와 비교하여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다음의 <표 1>은 삼성경제연구소가 측정한 자료로서, OECD 평균에 상당히 미달하고 있음을 보여줌

<표 1> 한국의 사회적 자본 수준

분야	신뢰	사회규범	네트워크	사회구조
네덜란드	7.60(2)	7.33(9)	9.65(1)	7.10(8)
한국	5.21(24)	5.19(22)	6.00(13)	5.77(22)
OECD 평균	6.18	6.32	5.99	6.31

자료 SERI(2009).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으로 칭함)이라는 새로운 명칭의 법으로 대체되었음.

○ 경제적 가치의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의 사회자본 축적 수준은 낮은 것으로 연구됨. 즉 사회자본은 경제적 가치로도 측정되고 있는데, 이 측정에서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사회적 자본 수준은 10만7864달러로, 분석대상 118개국 중 26위 수준이며(세계은행,2007),[3]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1인당 35만3339달러에 비하면 3분의 1에 불과한 실정임.

<그림 1> OECD 주요 국가의 사회적 자본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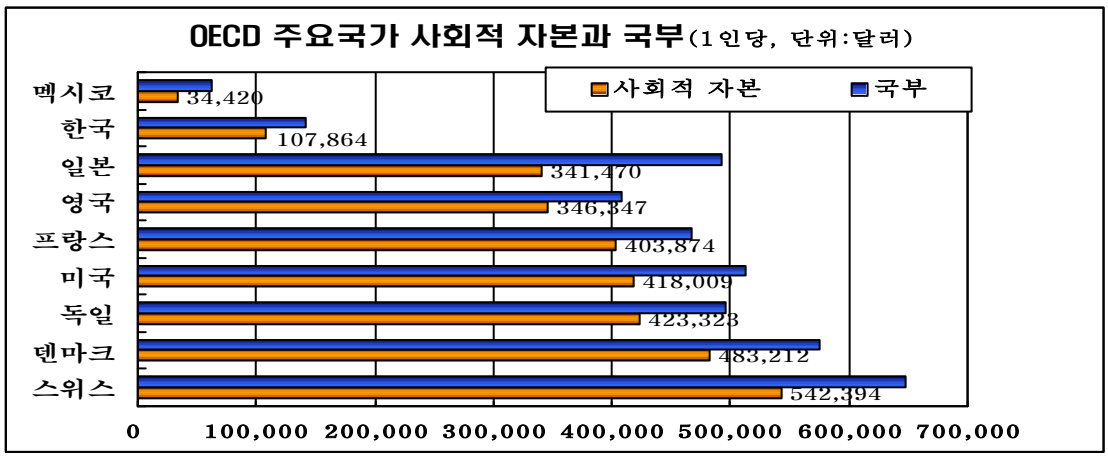

2) 우리나라의 청렴도 수준

(1) 세계인이 보는 우리나라의 부패수준

○ 매년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부패 수준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 수준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리고 그 결과는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청렴도 인식으로 조사되고 있음.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절대적 수준에서 수년째 낙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4-5점대(10점 만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2008년 이후는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3) World Bank(2007). Where is the Wealth of Nations.

<그림 2> 우리나라에 대한 부패인식지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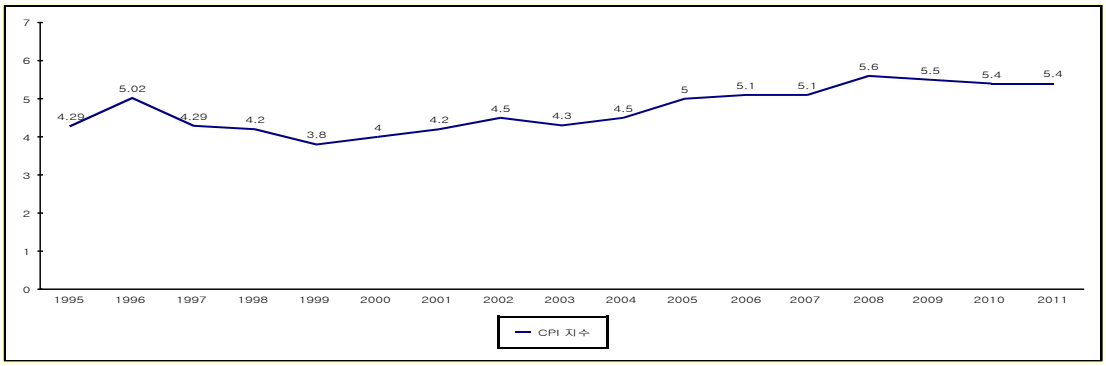

자료 : Transparency International. 각년도 자료.

(2) 우리 국민이 보는 우리나라의 부패 수준

○ TI 조사와 별개로 우리 정부도 지난 5공화국 이래로 부패 수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음. 그런데 청렴도 수준이 올라가기 보다는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국민권익위원회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부패인식도에 따르면, 국민들이 국가 사회 전체와 공직사회의 부패수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2011년 조사결과는 2006년 조사결과보다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음.

<표 2> 부패인식수준 비교 (단위 : %)

구 분	국가사회 전체		공직사회	
	'06. 11.	'11. 11	'06. 11.	'11. 11
일반국민	63.4	65.4	57.1	56.7
기 업 인	27.8('07)	26.7	32.8('06)	28.9
공 무 원	19.1	15.1	3.0	2.9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2012), 2011 국민권익백서. 내용 정리

(3) 도덕성 등 각종 의혹 속에 임명되는 고위 공직자

○ 새 정부 들어서 많은 임명직 고위 공직자들은 각종 의혹 속에 임명되었음. 고

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문회가 도입된 지 10년 이상이 지났지만 여전히 청문회는 각종 도덕성 관련 의혹들로 얼룩지고 있음. 다음 <표 3>의 자료는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만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지만, 지난 MB 정부에서 제기된 의혹 건수가 참여정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증하였음을 알 수 있음

○ 새로 들어선 정부의 인사청문회에서도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의 증가 추세는 줄어들기 보다는 급증한 경향을 보여서,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 수준에 대한 근본적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줌

<표 3> 청문회 제기된 의혹 건수 비교

정부	대상 인원		계	부동산 (재산)	위장 전입	병역	탈세	논문
MB정부 (08-10)	56	의혹건수	121	40	19	20	32	10
		1인당 건수	2.16	0.71	0.34	0.36	0.57	0.18
		비중(%)	100.00	33.06	15.70	16.53	26.45	8.26
참여 정부 (03-07)	84	의혹건수	73	30	4	24	13	2
		1인당 건수	0.87	0.36	0.05	0.29	0.15	0.02
		비중(%)	100.00	41.10	5.48	32.88	17.81	2.74
총합계	140	의혹건수	194	70	23	44	45	12
		1인당 건수	1.39	0.50	0.16	0.31	0.32	0.09
		비중(%)	100.00	36.08	11.86	22.68	23.20	6.19

2. 아직 정비되지 않은 국가청렴 시스템

○ 국내외적으로 우리나라의 청렴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 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절대적으로 높으며, 청렴성 수준은 개선되기 보다는 오히려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청렴을 전제로 하지 않는 성장과 발전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다는 점에서, 국가 발전을 위한 든

든한 인프라로서 청렴시스템의 구축과 실효성 확보가 중요함. 그러나 아직까지 국가 청렴성 제고를 위한 법과 제도, 조직 등 국가 수준의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고, 실효성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1) 국가청렴정책 추진 및 총괄 기구의 모호성

○ 국가 청렴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기구가 존재함. 국가청렴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 관련한 기구는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음. 즉 헌법상의 감사원에서부터 검찰,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개별 기관 내부의 감사실에 이르기까지 다양함

○ 그러나 청렴 관련 기구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는커녕 불신을 받고 있음. 부패방지 및 청렴성 제고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검찰은 국민들이 가장 불신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아직도 국민들에게 충분히 각인되지 못하고 있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극히 제한적 기능만 수행하고 있음

○ 동아시아연구원이 2005년 이후 매년 조사하고 있는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그동안 검찰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신뢰도는 반대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영향력 순위 면에서, 검찰은 2005년 조사 이후 1위를 놓친 적이 없는 가장 힘 센 기관임. 그러나 신뢰도 순위는 경찰이나 국세청보다도 낮은 수준임.

<표 4> 검찰의 영향력과 신뢰도 변화(2005-2011)

	2005	2006	2007	2008	2009	2011
영향력	6.12	5.97	6.17	6.19	6.68	6.43
신뢰도	4.79	4.80	4.87	4.63	4.48	4.51

자료 : 동아시아연구원. 여론조사자료. *2010년은 조사를 실시하지 않음

○ 2009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실시한 주요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응답자 10명중 4명꼴인 42.3%가 “시민단체”를 가장 신뢰하는 기관으로 꼽았고,

반대로 검찰은 3.2%로 최하위로 나타났음(2009년 6월 4일 조사)[4]

○ 다양한 관련 조직들이 만들어졌지만, 어느 조직도 우리나라 국가청렴 정책과 관련한 종합적 조정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부패방지위원회' 및 '국가청렴위원회'는 당초 부패방지 및 국가청렴성 제고를 위한 핵심적인 정부조직으로 설치되었지만, 실질적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결국 이명박 정부 하에서 위원회 축소 및 작은 정부라는 명분하에 이질적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와 통합되어 국민권익위원회가 되었음. 결국 부패방지, 국가청렴이라는 중요한 국정과제가 정부조직설계상 후퇴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는 우리나라 청렴수준의 하락으로 나타났음. 또한 참여정부 하에서 그나마 제한적으로 확보하고 있었던 정책조정기능, 즉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주관하는 역할마저 폐지됨으로서 우리나라의 반부패 청렴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시스템은 사라지게 됨

2) 관련 법체계의 분산과 입법의 불완전성

○ 국가청렴성이 제대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의 분산, 분산된 권력에 대한 견제장치의 확보와 실행, 정부조직의 운영을 담당하는 공직자의 윤리 확보,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임. 즉 권력의 분산에 기초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 하에 사전적으로 공직자의 윤리가 확보되고, 사후적으로는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청렴성 제고를 위해서는 윤리-반부패 정책의 일관성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즉 공직자의 윤리 확보와 부패의 방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정책적 일관성과 통합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법이 현재 '공직자윤리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임[5]. 그런데 현재 이 법들은 내용상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소관 부처를 달

4) 2005년 미국에서 갤럽이 미국인을 상대로 "신뢰하는 자국의 공공기관과 조직"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복수 응답), 군대가 81%로 1위를 차지했고, 병원(80%)이 2위였으며, 경찰·검찰(72%)이 3위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우리와 비교가 됨.

리하여 운영됨으로서 정책적 연계성도 확보하지 못함

○ 현행 '공직자윤리법'명칭에 부합하지 못하는 제한적 기능만 수행하고 있음. 즉 공직자윤리법은 1981년 제정되어 1983년부터 운영되고 있지만, 명칭과 달리 전 공무원의 윤리를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등록, 공개하는 일부 고위직에만 적용되는 매우 제한적인 법임. 게다가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이해충돌 방지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공직자의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법으로서 매우 불충분함. 제정 이후 지금까지 40차례 가까이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입법의 상태에 있음

○ 현 국민권익위원회도 실질적 권한이 없는 가운데 국가청렴기구로서의 정체성이 약해졌음. 부패방지법은 당초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조사하고, 부패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지만, 정부 및 국회에서의 논의과정에서 부패방지 관련 정책을 주로 담당하는 법으로 축소되어 2001년 제정되었으며, 이에 근거하여 부패방지위원회(2002), 국가청렴위원회(2005), 그리고 현재의 국민권익위회(2008)가 설치되었음. 이와 같은 변화과정 속에서 부패방지 및 청렴정책의 명확성이나 정체성은 제대로 부각되지 못하였음. 또한 2002년 부패방지위원회 설립 이후 10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정책의 실효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조정, 총괄기능이나 조사권 등은 주어지지 않았음.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나라 청렴성 수준의 하락으로 나타났음

○ 반부패, 청렴 관련 법제는 시급히 정비, 체계화되어야 할 것임. 공직자윤리법은 일부 제한적인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으로서, 공직윤리 확보의 핵심인 이해충돌 방지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며, 부패방지법 및 이에 기초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대로 된 권한을 확보하지 못하여, 공직자윤리법과 부패방지법 모두 명칭에 전혀 어울리지 않은 나약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5) '부패방지법'은 2001년 제정되었지만, 2008년 3개 위원회의 통함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었음. 이하에서는 '부패방지법'으로 축약하여 서술함

Ⅲ. 공직윤리 및 부패방지의 제도화[6)]

1. 우리나라에서 공직사회 및 공직자가 차지하는 특별함

○ 우리나라에서 공직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큼, 규모면에서도 그렇지만, 공직자의 사회적 평판이나 위상이 매우 높아서 많은 취업 지원자들이 공직자가 되기 위하여 길게는 수년 동안 시험공부에 매달리고, 경쟁률도 민간기업의 경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음.

○ 이와 같은 높은 위상은 공직 및 공직자에게 본래적으로 부과되어 있는 고귀한 가치, 즉 이타성, 공공성 등의 선한 가치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는 공직이 갖는 권력성과 안정성이라고 할 수 있음. 즉 공직자에게는 비록 신탁이나 법에 근거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민간부문을 규율할 수 있는 권력이 부여되어 있음. 그러나 이 권력이 충분히 견제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7)]. 반면 공직사회 구성원의 균일성으로 인하여 내부결속력이 강하고, 이것은 대외적으로는 폐쇄성으로 나타남. 물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그 동안 있어왔음. 예를 들어서 본고에서 논의하는 공직자윤리법이 그 한 예에 해당함. 이외에 정보공개와 관련한 제도, 개방형 임용제도, 최근에는 참여예산제도 등 많은 장치들이 만들어졌음.

○ 그러나 현재의 공직사회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듯, 공직사회의 변화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님, 즉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함. 특히 공직사회가 국가 통치구조에 있어서 일종의 과두제(oligarchy)처럼 작동하여 왔던 것이 사실이라는 점에서 변화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님

---

6)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저자의 논문을 일부 재정리한 것임. 윤태범(2010), 한국과 미국의 공직윤리 시스템 비교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15권 3호.

7)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금융감독기구와 금융기관과의 감독 부실 및 부정적 유착문제가 이에 해당함.

2. 공직윤리의 특성과 관리 필요성

○ 일반적으로 공직자의 윤리(및 이에 따른 책임성)가 제대로 논의되기 위해서는 결과주의(Consequentialism)와 의무론(Deontology)이 균형있게 반영되어야 함(Mathew,1998). 공무원의 행위에 대한 평가는 결과주의적이며, 동기에 대한 평가는 의무론적인 것으로서, 양자는 모두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임(Thompson, 1987:8-9).

○ 결과주의에 근거한 공직자의 행위에 대한 평가는 사후적인 것으로서 예방보다는 발생한 문제의 처리에 중점을 두게 되는데, 이것은 톰슨이 말하는 '더러운 손'이나 '여러 손의 문제'로 접근이 쉽지 않음. 의무론에 입각한 동기의 평가는 도덕적 원칙을 더 강조하는데, 이 의무론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선한 목적을 위해 부도덕한 수단을 사용할 필요성이 없어야 하고, 그 수단 또한 도덕적이어야 하지만(Mathew, 1998), 이 또한 쉽지 않음.

○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오랫동안 공직자의 책임성과 도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들이 결과주의 관점에 편중되었으며, 의무론에 입각한 방안들을 잘 고려하지 못했음. 의무론적 입장에 관련된 제도로서 윤리강령, 행동강령, 공직자윤리법을 들 수 있음. 이들은 기본적으로 행위의 '결과'보다는 '동기'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동기의 부도덕한 실현을 사전에 제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서, 적발과 처벌 중심의 사후통제수단을 강조하는 기존의 결과주의적 접근과 차이가 있음[8].

○ 공직자에 대한 윤리관리를 강조하는 것은 공직자가 처하고 있는 독특한 특성에도 기인함. 공직자들은 무엇보다도 공직자로서의 신분과 더불어 사회를 구성하는 사인(私人)으로서의 신분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공직자들은 이율배반적인 상황에 자주 처함. 그런데 공직자에게는 직무수행에 있어서 자신의 사적 이익에 앞서서 사회의 공적 이익을 충족시켜야 할 책무가 부과되어 있음.

8)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OECD(1999,2000)도 각종 보고서를 통하여 소위 윤리기반(ethics infra)이나 윤리관리(Ethics Management)를 강조하고 있다.

게다가 사인으로서 개인의 윤리적 관점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정책일지라도,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공직자'라는 신분 때문에 수용하는 경우도 있음.

○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양심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수도 있음. 비록 부도덕한 행위로 보일지라도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을 하며, '행위의 부도덕성을 결과(법적 정당성)가 변명해 준다(When the act accuses, the results execues)'는 명제를 채택함(Thompson,1987:12).

○ 그런데 문제는 공직자들이 더러운 손의 문제를 피하기 쉽지 않다는 것임. 이를 회피할 경우 오히려 무능력하거나, 자질이 없거나, 의리 없는 사람으로 낙인되기도 함. 그러나 왈쩌(Walzer, 1973:161)는 "정부의 개별적인 행위가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는 수용될 수 있지만, 그러한 행위를 수행한 사람에게는 도덕적으로 잘못을 범했다는 죄의식을 남길 수 있다"고 함. 때문에 공직자들이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 상황의 해결책임을 공직자 개인에게만 부과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그 책임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 운용하는 조직(관리자)에 부과되어야 함.

3.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

○ 공직윤리를 기관 수준에서 관리하고자 할 경우, 공직윤리는 대개 윤리(행동)강령과 윤리법 등의 법률상 계층적 구조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입법화되어 있음. 따라서 법적 체계와 그 속에 담겨진 내용을 통해서 공직윤리에 대한 입법주체들의 가치나 의식을 알 수 있음. 그리고 이들 법령에서 윤리 관리를 위하여 가장 많이 강조되는 것이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회피제도임.

○ 공직자의 윤리 확보는 공직자윤리법과 같은 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윤리강령이나 행동강령과 같이 다소 규범적 형태로 표현되기도 함(윤태범,2002a). 강령(code)은 특정한 조직이나 전문가 집단의 가치를 대표하는 열망, 규제, 혹은 안내의 집합체이기 때문에(Pritchard,1998:527), 조직별로 강

령의 형식이나 내용이 다양함[9]. 강령은 대개 문서화된 형태로 있지만, 반드시 문서화된 것만을 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기본적으로 공직윤리는 공직자들이 직무의 수행과정에서 기대되는 '선'을 선택하고 '악'을 피하도록 도와주는 안내자 역할을 함(Rohr,1991). 이 안내를 구체적이고 세밀한 법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공직윤리법(이하 윤리법)'임. 윤리법을 통하여 무엇이 필요한 행동이며, 어떠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알 수 있음(윤태범,2002b). 또한 이 윤리법은 사회의 지배적 가치에 근거하여 사회적으로 합의된 다양한 규범들 중에서 강제력을 갖는 법으로 제정되기 때문에(Cooper,1998:141-142), 윤리법은 규범성과 실천성(혹은 강제성)을 동시에 지향함[10]. 이 같은 의미를 지닌 법이 나라별로 윤리법 혹은 부패방지법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제정, 운용되고 있음[11].

○ 윤리강령이나 윤리법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윤리관리 방식이 이해충돌 방지 제도임[12]. '이해충돌'은 둘 혹은 그 이상의 이해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로서, 한 사람 내에서 혹은 두 사람 이상 간에 발생함(Davis, 1998 :589). 공직자의 이해충돌은 '공무원들에 공적으로 부여된 직무수행상의 의무와 사인으로서의 개인의 사적 이해의 충돌'을 의미함. OECD(2003:53)에서는 '공무원의 공직과 사적 이익 사이의 충돌로서, 공직자의 사적 이익에서 나타나며, 이 이익들은 공직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정의함(윤태범,2005:113-114).

○ 공직자가 이와 같은 이해충돌의 상황을 적절하게 회피하지 못할 경우 윤리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직윤리 확보 방법으로서 '이해충돌의 회피'가 강조됨. 물

---

9) 강령(code)은 사전적으로는(Webster 사전에 의하면) ①문서화된 법의 집합체 ②도덕적으로 엮어져있는 규칙의 체계 혹은 집합체 ③의미있는 의사소통을 위한 상징체계의 3가지 의미로 정리되어 있다.

10) 윤리법은 윤리적 규범과 법률상 구성되는 범죄의 중간지대를 형성하고 있다(Zimmerman, 1994:8).

11) 윤리의 법제화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cooper(1998:145-147)을 참고할 수 있다.

12)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의 접촉이 증가하면서 공익과 사익의 충돌(즉 이해충돌)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여기서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의 회피는 이익충돌, 이익갈등, 이익 상충, 이해상충 등 다양하게 불리는데, 일반적으로는 이해충돌이라는 용어를 다수가 사용하고 있다.

론 이해충돌이 바로 부패문제 발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 이해충돌이 명시적 부패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 간격이 필요하기 때문임(윤태범,2005:114-115). 예를 들어서 공직임용 후보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재산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을 제기할 경우, 대부분의 후보자들은 소유재산과 관계없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아직 이해충돌을 일으키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이해충돌의 사전적 회피를 거부함(윤태범,2004:5-6). 그러나 이것은 기존의 결과주의적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임[13]. 의무론에 입각한 이해충돌 회피제도의 기본적 입장은 행위의 고의성, 자의성, 결과에 대한 판단을 처음부터 배제하기 때문임.

Ⅳ. 이해충돌의 회피

1. 공직자의 이해충돌 회피의 의의와 논리

○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의 접촉이 증가하면서 공익과 사익의 충돌(즉 이해충돌)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은 이익충돌, 이익갈등, 이익상충, 이해상충 등 다양하게 불리는데, 일반적으로는 이해충돌이라는 용어를 다수가 사용하고 있음.

○ 이해충돌은 한 사람의 특정한 이익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야 하는 자신의 적절한 활동을 방해하는 성향을 갖는 상황을 의미함.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충돌의 주요 구성요소는 관계, 판단, 이익, 적절한 행동 등임. 이러한 이해충돌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분류될 수 있음.

---

13) 현재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이 임명하는 일부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해당자의 자격이나 능력 등에 대한 검증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결국 직무수행시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를 제거하고자 하는 중요한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인사청문회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그 절차가 바로 국민의 직접적 대리관계에 있는 의원들에 의하여 진행되기 때문이다. 비록 인사청문회의 결과가 임명권의 행사에 대해서 직접적인 구속력을 지니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대리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그것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 첫째, 실질적 이해충돌(actual conflict of interest)로서, 현재 발생하고 있고, 과거에도 발생한 이익충돌의 경우
- 둘째, 외견상 이해충돌(apparent conflict of interest)로서, 공무원의 사익이 부적절하게 공적 의무의 수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이익충돌의 상태로서, 부정적 영향이 현재화된 것은 아닌 상태
- 셋째, 잠재적 이해충돌(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의 경우로서, 공무원이 미래에 공적 책임에 관련되는(갈등 야기하는) 일에 연루되는 경우

○ 이해충돌 회피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 대하여 판결할 수 없다(No one may judge his/her own case)”임. 이러한 원칙은 자신만이 아니라 부적절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구성원과 여타 사적 관련자들에게도 확장, 적용되는 것으로 인식됨.

○ 이해충돌의 회피에서 ‘회피’는 충돌되고 있는 이해관계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함. 즉 이해충돌에는 기본적으로 ‘관계’라는 속성이 내재되어 있음. 즉 여기서 관계는 공무원 본인에 있어서의 공적 의무와 사적 이익의 관계, 공무원과 타인(기업가든, 친척이든)과의 관계 2가지를 모두 포함함.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해충돌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관계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을 통상 ‘회피’라는 용어로서 정의함.

2. 이해충돌의 발생영역

○ 공직자의 이해충돌은 크게 분류하면 공직에의 입직단계, 재직 중, 그리고 퇴직 후의 단계에서 발생 가능성이 있음. 통상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은 공직자의 공직 재직 중에 가장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공직의 특성상 입직단계와 퇴직 후의 단계에서도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함.

○ 물론 입직 전 혹은 퇴직 후의 이해충돌은 재직 중의 직무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사실상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즉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있어서의 공정성 확보는 재직 중의 사항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입직전의 상황(주로

재정적 상태) 및 퇴직 후의 상황(주로 재취업 혹은 퇴직 후 활동)과도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함[14].

○ 입직전의 이해충돌문제는 주로 공직자가 입직 전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입직 후 담당하게 될 직무와의 이해충돌 문제로서 논의될 수 있음. 예를 들어서 장차관등 고위직으로 임용이 예정되어 있는 민간부문 후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주식 혹은 부동산)과 담당하게 될 직무가 이해충돌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음. 정보통신 관련 주식을 보유한 인사가 관련 부처에 임용될 경우, 이 공직자가 주도하는 정보통신 관련 정책은 공정성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들의 불신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우리나라도 백지신탁제도(Blind Trust)가 도입되었음.

○ 재직 중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이해충돌도 역시 앞서의 경우와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음. 즉 재직 중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혹은 사적인 이해관계가 공직자가 수행하는 업무와 이해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음. 예를 들어서 보유하고 있는 사적인 재산만이 아니라 사적인 연고관계도 공적인 직무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음. 이 때문에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이해관계 직무에 대한 회피규정을 두어서, 이해충돌의 발생 가능성은 물론 이에 대한 회피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퇴직 후에도 공직자는 이해충돌의 가능성에 직면함. 퇴직 후 발생 가능한 이해충돌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서 논의될 수 있음. 하나는 퇴직 후에 재직 중 지득/확보하고 있는 공적인 정보와 권한을 퇴직 후에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활용하거나 혹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이며, 또 다른 하나는 퇴직 후 특정기업이나 단체에의 고용을 예상(혹은 약속)하여 재직 중에 이 기업에 대하여 표면상 공정하게 보이는 이권(인허가권 등)을 부여하고, 퇴직 후에 이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음.

---

14) 전관예우가 문제되는 것은 퇴직 후 발생하는 이해충돌의 발생과 더불어, 퇴직후 발생이 기대되는 이익이 결국 재직중의 공정한 직무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임.

○ 어느 경우이든 이와 같은 행위들은 공직자가 당연히 추구해야 할 공직 수행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공직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퇴직 후라 할지라도 재직 중과 유사한 이해충돌 회피의 규정을 두어야 할 것임.

○ 이와 같은 점에서 보면, 공직자에게서 발생 가능한 이해충돌은 입직전의 상황에서부터 재직중, 그리고 퇴직 후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공직자의 공직 생애주기 전 과정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측면을 충분히 고려한 이해충돌 회피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3. 이해충돌의 회피방식

○ 이해충돌의 회피를 설명함에 있어서 '주인-대리인'이론이 많이 활용되고 있음. 즉 공직자의 이해충돌은 대리인인 공직자가 주인인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임.

○ 대리인 이론의 측면에서 이해충돌을 회피하는 방식은 2가지임. 즉 대리인의 입장이냐 혹은 주인의 입장이냐에 따라서 구분됨. 예를 들어서 대리인의 입장에서는 관련된 주식이나 재산을 이익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분하는 소극적 회피의 방식이 있을 수 있음. 주인 입장에서는 대리인 관계를 아예 철회하거나 혹은 대리인의 직무를 변경하여 이해충돌의 해소하는 적극적인 회피방식이 있음. 그러나 대리인 관계의 철회(즉 공직에서의 배제)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면, 이해충돌 회피의 법제화와 관련해서는 소극적 회피와 적극적 회피의 2가지 방식을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현행법상 대통령이 임명하는 일부 장관급 공직자에 대해 제한적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고 있음. 인사청문회제도는 후보자의 자격이나 능력에 대한 검증도 의미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직무 수행시 발생 가능한 이해충돌의 문제를 사전에 확인하고 이를 제거하는데 목적이 있음.

○ 따라서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그 절차가 바로 국민의 직접적 대리관계에 있는 의원들에 의하여 진행되기 때문임. 비록 인사청문회 결과가 임명권자에게 제한적인 구속력만을 갖지만,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적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임명권자에 의하여 마땅히 존중되어야 할 것임.

○ 이해충돌은 그 자체로서 중요성을 지니고 있음. 체계적인 이해충돌 회피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미국의 경우, 당연히 이해충돌 자체를 윤리성 확보를 위한 핵심의제로 보고 있는 것이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먼저 강조하는 것은 아님.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직자의 이해충돌은 공직에의 입직 전, 재직 중, 그리고 퇴직 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단계별로 이해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방안도 다양할 수 있음.

○ 먼저 입직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이해충돌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백지신탁제도의 경우처럼 이해충돌을 야기하는 관련 주식이나 자산을 처분하거나, 혹은 이해충돌을 야기하지 않는 직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임. 물론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입직전 에 공직 후보자가 처하고 있는 상황과 담당하게 될 직무간의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재직 중의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해서는 주로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해소방안이 제한적이나마 제시되어 있음. 예를 들어서 담당하고 있는 특정 직무와 자신의 사적인 이익이 충돌할 경우, 당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거나, 다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거나, 혹은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는 등의 안을 들 수 있음.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이와 같은 이해충돌의 방지를 위하여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특혜의 배제, 이권개입 등의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외부강의 등의 신고, 금전의 차용 금지 등 다양한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음.

○ 퇴직 후 발생가 능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가장 대표적인 규정은 현행 공직자

윤리법상의 '퇴직 후 취업의 제한'에 대한 규정임. 즉 현행법에서는 퇴직 후 2년간 퇴직 전 3년 동안 담당하였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대한 취업을 금지하고 있음. 물론 현행 법률상 많은 허점이 있지만, 현재는 이 제도를 통해서 공직자의 퇴직 후 발생 가능한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음. 비위면직자의 퇴직 후 취업 제한에 대해서는 부패방지법에 규정되어 있음.

Ⅴ. 우리나라의 공직윤리 관련 법체계 및 문제점

1. 공직자윤리법

○ 공직자의 퇴직후 이해충돌 방지 등 윤리 확보와 관련한 가장 직접적인 법은 공직자윤리법임. '공직자윤리법'은 1981년 12월 31일 제정되었는데, 바로 1년 전인 1980년 12월에'공무원윤리헌장'이 제정되었음. 헌장과 공직자윤리법 모두 당시 새롭게 들어선 정부[15]가 설치하였던 사회정화원회의 활동의 한 결과로서 만들어졌음. 1980년 10월 10일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사회정화위원회 관련 회의에서 공무원 재산등록제도를 마련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당시 내무부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윤리법 제정을 준비하기 시작하였음. 이 법의 준비와 관련하여 당시 사회정화위원회에서도 위원회 직원과 대학교수 등을 외국에 파견하여 연구하기도 하였음(사회정화위원회,1988). 1981년 5월 14일 내무부에 의하여 정부안이 마련되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16], 같은 해 12월 17일 국회에서 무수정으로 통과되었음[17].

---

15) 1980년 9월 1일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하였다.

16) 당시 내무부 실무위원회는 미국, 싱가폴,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필리핀 등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그러나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부패방지법과 유사한 명칭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정부윤리법의 명칭을 갖고 있었던 미국의 사례가 가장 많이 참조되었다. (국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1981.5.14)

17) 국회에서의 논의당시, 크게 논란은 없었는데, 다만 현경대 의원은 윤리법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

○ 그러나 제정 당시 법은 명칭과 달리 핵심내용을 충분히 담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제정되었음. 이 법은 앞서 1978년 미국에서 제정되었던 '정부윤리법(Ethics in Government Act)'의 몇몇 명칭만 차용하였을 뿐, 미국 정부윤리법의 핵심내용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회피, 등록된 재산의 공개, 이해충돌 공직 후보자의 취임 제한과 '백지신탁(blind trust)', 퇴직 후 이해충돌 방지위한 활동 제한 등을 누락하였음. 즉 1981년에 제정된 우리의 공직자윤리법에서는 등록된 재산을 비공개로 하도록 하고,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한 규정은 아예 포함되지 않았으며, 퇴직 후 취업제한도 일부 영리 사기업체에 대한 취업 제한으로 최소화하여 규정하였음.

○ 이와 같이 근본적 결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개정되지 못하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다가, 부패청산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1993년 6월에 들어서야 비로소 의미있는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음. 이와 더불어, 시행령으로 위임한 등록대상 특정 공무원의 범위도 확대하였음[18]. 공직자윤리법의 가장 의미있는 개정중의 하나는 2005년의 백지신탁제도 도입임[19]. 이 제도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주도로 도입이 주장되었음.

○ 2003년과 2004년 이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참여연대에 의하여 국회에 입법청원되었음. 당시 이 제도에 대해서 공직자윤리법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초기에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각 정당들이 이 제도의 도입을 공약화하고, 대통령도 도입의지를 밝힌 가운데 2005년에 도입되었음. 이로써 미국의 정부윤리법의 핵심조항인 백지신탁제도(blind trust)가 우리의 공직자윤리법에 도입되었음. 현재까지 이루어진 공직자윤리법의 주요 개정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의를 제기하였다. 즉 윤리와 법은 다른 영역으로 하나의 단어처럼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추가적인 논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국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1981.5.14)

18) 1993년 7월의 개정 시행령에서는 재산등록의무자를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연구관 등, 감사원·국세청 및 관세청소속 5급·6급 공무원, 법무부·검찰청소속 5급·6급인 검찰사무직공무원, 경정·경감인 경찰공무원, 소방령·소방경 및 지방소방령·지방소방경인 소방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의 집행간부로 확대하였다(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조).

19) 자세한 논의는 이해충돌방지제도 부분에서 다룬다.

<표 5> 공직자윤리법의 주요 개정내용

개정연도	주요 내용
제정 (1981.12.31)	- 공직자의 재산등록(3급 이상 공무원, 5급 이상 세무공무원 등) - 등록된 재산의 비공개 원칙 - 퇴직 후 유관 사기업체에의 취업 제한(퇴직전 2년간 업무관련)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설치(9인중 2인 민간위원 선임)
1993.6.11	- 재산등록 의무자 범위 확대(3급에서 4급이상으로, 대령이상, 지방의원) - 등록대상 재산의 구체화(시행령 내용 법에 포함시킴) - 유자별 재산 취득일자, 경위, 시기 등을 기재, 소명자료 첨부 -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변경(9인중 5인은 민간위원 선임) - 등록된 재산의 공개(1급 이상 공무원, 3급이상 세관장, 치안감 이상) - 공직선거후보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 - 처벌규정 강화(재산등록거부의 죄 등)
2001.4.27	- 재산변동사항 신고시 주식거래내역신고서를 등록기관에 추가 제출 - 퇴직공직자가 퇴직전 2년 이내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관련있는 사기업체에 취업제한을 퇴직전 3년간으로 확대
2005.11.19	-이해충돌방지의 의무 규정 추가 -백지신탁제도 도입(이해충돌 있는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이해충돌 있는 주식취득의 제한
2007.6.29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 허가제도
2009.2.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대상에 한국은행,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 포함
2011.10.30	- 등록의무자에 공기업 상임이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추가 - 공개대상자에 소방정감 이상 소방공무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추가 -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정수를 5명에서 7명으로 확대 - 업무관련성 판단기간을 퇴직 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 취업심사대상기관을 영리사기업체에 외에 일정 규모 이상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까지 확대 - 사외이사, 비상근 자문,고문 등의 직위 취업도 취업심사대상 포함 - 재산공개대상자는 퇴직 후 1년간 퇴직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한 업무 취급 금지 - 퇴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 금지

2. 공직자윤리법의 내용과 문제점

1) 공직자윤리법 제정 및 운용 목적의 미정립

○ 1981년 제정 이후 수십 차례 개정되었고, 특히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계기로 공직자윤리법의 내용이 다양해지면서, 동법의 목적이 비체계적으로 구성됨. 사실상 공직자윤리법의 핵심적인 가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다만 제2조의2에서 이해충돌 방지의무만 규정되어 있을 뿐임. 그리고 주식과 관련한 이해충돌 및 퇴직후 발생할 이해충돌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현직에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2) 공직윤리의 확보를 위한 기본법으로서 규정 미흡

○ 공직자윤리법은 애초 공직자 재산등록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명칭상, 그리고 최초 제정 이후 개정 과정에서 다양한 공직윤리 관련 내용들이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본법으로서의 규정이 취약함. 예를 들어서 공직자에게는 윤리와 관련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이해충돌 방지의무만 규정되어 있음. 물론 이와 관련한 규정이 부패방지법에 있어서 중복 규정의 문제가 있음. 이와 같은 문제는 통합의 필요성이 있는 두 법이 별개의 법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임

3)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협소한 권한

○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은 해당 공직자가 재산등록을 성실히 하였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주된 것임. 공직자윤리법의 핵심적 가치가 되어야 할 이해충돌, 즉 공직자가 등록한 재산과 수행하는 수행중이거나 혹은 수행 예정인 직무간의 이해충돌을 심사하지 못함. 이로 인하여 결국 공직자가 처하게 될 다양한 이해충돌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지 못함. 물론 주식에 대

해서만 제한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임

4) 고지거부권의 활용을 통한 재산등록의 회피

○ 그 동안 많은 비판이 있었던 문제임에도 여전히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고지거부권이 존치되어 있음. 이로 인하여 많은 등록 대상자들이 등록을 거부하고 있음. 현행법과 같이 등록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법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우리나라만의 특성을 강조한 것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음. 지극히 원론적인 차원에서 위헌의 문제를 제기하지만, 한국적 상황을 고려하지 지적임

5) 공직윤리의 핵심인 이해충돌 회피에 대한 규정 미비

○ 주요 선진국에서는 공직자의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 제도로서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활용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의 공직자윤리법에는 이와 관련한 규정이 매우 미비함. 이해충돌 방지 의무가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공직자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심사도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해충돌의 상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도 제시되어 있지 않음.

6) 퇴직 공직자의 이해충돌 행위 방지 규정 미흡

○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는 퇴직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취업'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그 동안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던 취업이 아닌 형태의 이해충돌 관련 '행위의 방지 요구를 수용하여, 일부 행위 제한에 대한 규정을 2011년 신설하였음. 그러나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한 행위는 법령 위반 및 권한 남용을 야기하는 부정한 청탁 및 알선의 규제에 대한 것으로서, 이해충돌 행위에 대한 규제는 아니라는 점에서, 여전히 이해충돌 해위의 규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7) 취업제한 대상 기관의 협소

○ 현행법에서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대상기관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및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으로 하고 있음. 법무법인 등은 그 동안 누락되어있다가 지난 2011년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개정이라고 할 수 있음. 다만 여전히 영리업체로만 제한되어 있어서 이해충돌의 방지에는 제한적임. 즉 이해충돌은 영리업체만이 아니라 비영리업체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현 공직자윤리법이 제한하지 않고 있음.

Ⅵ. 미국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1. 윤리강령

○ 미국의 윤리강령들은 기존의 강령을 지속적으로 대체, 발전시키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음. 즉 강령 제정이 필요한 경우에 각기 관련 강령들이 제정되거나 혹은 수정되어 왔음.

1) 공무원 윤리 표준 지침(1961)

○ 케네디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를 둘러싸고 법정 다툼 등 고위공직자에게 적용되어야 할 바람직한 윤리적 기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음. 이에 따라서 케네디 대통령은 취임한지 이틀만인 1월 22일 '이해충돌 자문위원회(Advisory Panel on Conflict of Interest)'를 설치함. 3월 2일 동 자문위원회는 고위 공직자 윤리 개선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대통령에게 제출하였으며, 케네디 대통령은 4월 27일 이 개선안에 기초한 "정부에 있어서의 윤리적 행동(Ethical Conduct in Government)"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의회로

보냄. 자문위원회의 건의안에 기초한 연방집행명령 10939인 '공무원 윤리 표준 지침(To Provide a Guide on Ethical Standards to Government Officials)'이 5월 5일 제정, 서명되어 연방정부 공무원 및 백악관 직원들에게 적용되기 시작함[20].

2) 공무원 윤리적 행동 표준(1965)

○ 존슨은 대통령 당선 후 1964년 대통령실과 인사위원회 공동으로 정부윤리 제고 방안을 마련토록 함. 1965년, GAO 조사를 통해서 주요 계약당사자들이 정기적으로 국방부 공무원들에게 선물, 향응 등을 제공한 것이 밝혀진 가운데, 존슨 대통령은 5월 9일 연방집행명령 11222인 '공무원 윤리적 행동 표준(Standards of Ethical Conduct for Government Officers and Employees)'를 제정하였는데, 이것은 케네디 대통령의 연방집행명령 10939를 대체하였음[21]. 1989년 부시 대통령에 의한 연방집행명령 12674 제정 전까지 이것은 연방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윤리적 기준으로 활용됨.

3) 공무원의 윤리적 행동원칙(1989)

○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 동안 많은 연방 공무원들이 윤리관련 문제로 조사대상이 되었음. 이에 따라서 부시대통령은 1989년 1월 25일 '윤리법 개혁에 대한 대

---

20) '공무원 윤리 표준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executive order, 10939).
- 공직자로서의 자식의 직위와 충돌할 수 있는 외부고용이나 활동을 금지.
- 비용, 보상, 선물, 금전적 가치를 수수하는 것을 금지함.(사익을 위한 공직 활용 금지, 특정인에 대한 편파적 행정 금지, 정부 효율성에 대한 부담의 금지. 공정성 상실의 금지, 기타)
- 대통령 임명직의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함. 단 공직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허용됨.

21)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윤태범,2004:15).
첫째, 공무원인사위원회에 공무원 윤리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을 부여하였다.
둘째, 모든 연방기관들은 기관의 윤리 프로그램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선임 기관윤리담당관(DAEO : Designated Agency Ethics official)을 지정하도록 하였다.
셋째, 윤리규정을 개선하였다(선물, 향응 수수, 외부고용, 저술, 재정사항, 사익위한 정부정보 활용등).
넷째, 모든 공무원들에게 사익 위한 공직활용, 특정기구나 사람에 대한 편애 등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공무원인사위원회가 신뢰할 만한 재정보고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통령 위원회(President's Commission on Federal Ethics Law Reform)'를 설치하여 윤리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함. 이에 따라 자문위원회는 2달 정도 연구를 거쳐 3월 10일 보고서(To Serve with Honor : Report of the President's Commission on Federal Ethics Law Reform)를 제출함. 이 보고서는 전정부적으로 공무원들이 사례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존슨대통령의 연방집행명령 11222를 새로운 표준강령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함(윤태범,2004:15-16).

○ 그런데 이 보고를 받기 전날 1989년 3월 9일 상원은 부시 대통령이 지명한 전 텍사스 주 상원의원 출신 국방보좌관 후보자 John Tower를 음주 관련 문제로 인준을 거부하는 등 윤리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됨. 이런 상황 속에서 1989년 4월 12일 부시 대통령은 이 보고서에 기초하여 이전의 존슨 대통령의 연방집행명령 11222를 대체하는 연방집행명령 12674인 '공무원의 윤리적 행동원칙(Principles of Ethical Conduct for Government Officers and Employees)'을 제정하여 14가지 원칙을 제시함[22]. 연방집행명령 12674는 정부윤리국(USOGE)에게 객관적, 합리적이고 강제성 있는 단일의 종합적이고 명확한 표준행동강령을 제정하도록 함.

○ 이후 1991년 4월 워싱턴포스트는 백악관 비서실장 John Sununu가 비행기와 자동차 등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도함[23]. 이러한 논란 속에 1991년 4월 23일 USOGE는 새로운 표준행동규정을 제시하였으며, 1992년부터 발효됨[24].

4) 고위 공무원의 윤리적 헌신(1993)[25]

---

22) 주요 내용으로서 ·외부로부터의 선물수수의 제한, 외부고용의 제한, 재정적 이해충돌, 사익을 위한 공적 직위 남용, 그리고 재정적 의무의 충족 등이 있다(윤태범,2004:16).

23) 존 수누누는 공적 이용이라고 주장하였지만, 대선에서 이것이 쟁점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1991년 12월 3일 비서실장직을 사임하였다. Washington times, 1991. 12. 4. A1. ' Sununu leaves the line of fire'.

24) *http://www.usoge.gov/exorders/eo12674.html.*

25) William J. Clinton, Executive Order 12834, Ethics Commitments by Executive Branch Appointees, January 20, 1993.

○ 1993년 1월 20일 클린턴 대통령은 취임 당일 대통령의 첫 번째 권한 행사로서 연방집행명령 12834(Ethical Commitments by Executive Branch Appointees)에 서명함[26]. 이를 통해서 클린턴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의 고위 공직자는 공직을 떠난 후 5년 동안 해당 기관을 위하여 로비활동을 못하도록 함. 특히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외국 정부나 외국 기업을 위한 로비스트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함. 또한 대통령실에 근무하였던 전직 고위공직자들도 5년 동안 자신이 담당하였던 직무와 관련한 로비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음.

○ 이것은 1992년 미국 대선과정에서 불거진 논란과 관련됨[27].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Ross Perot은 전직 미국 고위관료가 미국을 대상으로 외국의 무역협상의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것을 비난하였으며, 이것이 선거의 이슈가 되었음[28]. 특히 1989년 윤리개혁법(Ethics Reform Act of 1989)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였음을 비판하며, 이것을 보완하는 목적으로 취임 첫날 이 같은 연방집행명령에 서명함. 클린턴은 이 명령에서 1993년 1월 20일 이후 고위직에 취임하는 공직자는 이 같은 명령에 근거한 윤리서약인 "고위 공무원 서약(Senior Appointee Pledge)"에 서명하도록 함[29]. 이에 따라서 퇴직후 활동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이루어지게 되었음.

---

26) Washington post, 1993. 1. 20 A1.

27) Washington post, 1992.12.10. A1.'ethics policy toughened'.

28) 이에 대해서 당시 언론의 보도와 페롯 후보의 공약(http://www.ontheissues.org/ Ross_ Perot.htm)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9) 서약의 내용은 "나는 공공의 신임을 받는 미국 정부의 고위공직자로 임용되는 조건으로서, 나에게 적용되고, 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다음의 의무사항들을 준수한다"이며,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퇴직후 5년동안 내가 근무하였던 조직을 대상으로 로비활동을 하지 않는다.
② 대통령실(EOP)에 고위직으로 근무하였을 경우, 퇴직후 5년동안 내가 고위 공직자로서 근무하였던 EOP 및 이와 관련된 어떤 기관에도 로비활동을 하지 않는다.
③ 고위공직자로 퇴직후 어떤 경우에도 외국 정부나 외국 정당을 대신하는 로비활동을 하지 않는다.
④ 무역협상이나 대표부에 참여하여 활동하였을 경우, 활동 종료후 5년동안 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나 외국 정당을 대신하는 로비활동을 하지 않는다.
⑤ 이 문서에 사인을 하기 전에 이 지침을 읽으며 이해를 한다. 그리고 이 규정들을 수용한다.

2. 윤리 관련 법[30)]

1) 정부윤리법(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 1974년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대통령직에서 사임한지 4년 이상이 지난 1978년 10월 28일, 당시 카터 대통령은 새로운 정부윤리법(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에 서명함. 카터대통령은 이미 선거과정에서 선거 이슈로서 회전문(Revolving Door) 문제 등 정부의 윤리문제를 강조하였었음. 워터게이트가 상징하듯, 많은 부패방지 및 윤리법에도 불구하고 정치, 행정부문의 윤리문제[31)]가 계속됨에 따라서 새롭게 정비된 윤리법의 제정 필요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임.

○ 새로운 정부윤리법은 크게 5가지의 주요 규정들을 담았음. 무엇보다 연방정부, 사법부, 입법부 공무원들에게 공무원 자신만이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의 재정상황도 '공개(Public Finance Disclosure)'하도록 하였음. 연방 공무원의 재정적 이해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백지신탁(Blind Trust)의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정부윤리국(OGE)을 설치하였음(윤태범,2004:9-10).

○ 또한 의회는 이 법에 대통령과 부통령을 포함하여 고위직 공무원들의 위법한 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 검사를 임명하는 조항을 포함시켰음. 1982년 의회는 독립적 검사의 명칭을 Special Counsel에서 Independent Counsel로 변경하였음. 특별검사의 임명이나 사임에 대한 대통령의 통제권을 막기 위하여, 윤리법은 특별검사의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검사가 쓰는 자금의 양이나 조사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았음[32)]. 또한 윤리법은 전직 연방 공무원에 의한 로비활

---

30)이 부분의 내용은 윤태범(2004:9-11)의 논문에 기초하여 축약, 재정리된 것으로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원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31)소비자안전위원회, NASA, 국방부의 전직 관료들의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윤리적 문제들이 쟁점으로 계속 부각되었다. 또한 1977년 9월 27일 당시 OMB 국장인 버트 랜스(Bert Lance)는 자신이 관여하였던 조지아 은행 관련 윤리문제가 제기되어 사임하였다. (Washington Post, 1980.5.1)

32)미국은 이전에도 관습적 형태의 특별검사제도를 운용하고 있었는데, 워터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보다 더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하에 정부윤리법에 근거하여 특

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는데, 이른바'1년의 냉각(cooling off)'이라는 규정을 통해 전직 공무원들이 연방정부를 대상으로 연방정부를 떠난 지 1년 이내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금지하였음[33].

2) 윤리개혁법(Ethics Reform Act of 1989)

○ 1980년대 말 미국 통상대표부 소속 연방 공무원들이 퇴직하여 바로 미국과 직접적인 이해충돌의 관계에 있는 외국 정부를 위하여 로비하는 윤리적 문제들이 발생하였음(윤태범,2004:10). 이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윤리적 논쟁들의 해소방안으로 새로운 공직윤리법을 만들게 됨.

○ 이 같은 배경하에 1989년 1월 25일 부시 대통령은 연방집행명령 12668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서'연방 윤리법 개혁에 대한 대통령 위원회(President's Commission on Federal Ethics Law Reform)'를 설치하였으며[34], 1989년 3월 10일 동위원회는 정부 윤리규정에 대한 일련의 권고안을 마련함. 그리고 1989년 11월 28일, 부시 대통령은 의회와의 긴 토론과정을 거쳐 '윤리개혁법'에 서명함. 동법의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35].

- 첫째, 하원의원은 보수인상 대신 1991년부터 연설료나 사례를 받는 것이 금지됨. 그런데 당시 상원의원들은 이에 반대하였기 때문에 상원의원들의 급여는 올라가지 않았음[36].

별검사제도를 한시법의 형태로 법제화하였다. 때문에 미국은 법제화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특별검사제가 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의 특별검사제 논의와 차이가 있다.

33) 이른바 회전문(revolving door)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이해충돌의 방지라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제도화되어 왔다. 다음에 언급할 '뇌물 및 이해충돌에 관한 법률'도 그 한 예이다.

34) 전 연방 대법관 Malcolm R. Wilkey를 위원장으로, 카터 행정부시 검찰총장인 Griffen B. Bell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위원회에 대해서 4가지 활동기준을 제시하였다. ①공직자의 사기를 제고할 수 있는 윤리기준 설정 ②객관적이고 일관된 윤리기준 제시 ③모든 연방정부에 적용가능해야 함 ④시민들이 공직 취임을 꺼릴 수 있을 정도이어서는 안됨.(President's Commission on Federal Ethics Reform, To Serve with Honor, Washington DC:The commission, 1989.3)

35) President's Commission on Federal Ethics Law Reform(1989).

36) 그러다가 1991년 8월 15일, 부시 대통령은 상원의원들이 사례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동의한

- 둘째, 이 규정은 새로운 다수의'회전문'관련 규정을 포함함. 기존의 1년으로 되어 있는 로비금지 기간을 분야별로 다양하게 확대 적용하여 강화함.
- 셋째, 연방 공무원들이 연방 윤리규정에 순응하기 위하여 자신의 재정적 재산을 매각하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는 박탈의 인증서에 대한 발급 규정을 제시함.

3. 이해충돌 방지제도

○ 공직자의 이해충돌 회피의 제도화에 대해서는 미국이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37]. 미국의 관련 제도가 너무 복잡하다는 문제점도 있지만, 적극적인 제도화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음.

1) 뇌물 및 이해충돌 법률(Bribery and Conflict of Interest Act of 1962)

○ 이해충돌에 대한 종합적인 입법으로서 '뇌물 및 이해충돌에 관한 법률' (Bribery and Conflict of Interest Act of 1962)을 들 수 있음. 이 법을 통해서 그 동안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던 이해충돌회피 관련법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게 되었음(윤태범,2004:8-9).

○ 1950-60년에 걸쳐 연방정부기관에서는 국민들의 주목을 끌었던 트루만과 아이젠하워가 지명한 고위직들을 포함하는 몇 건의 재정적 이익충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음.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60년 뉴욕시 변호사협회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법적 윤리법령들이 명확한 윤리적 가이드라인의 결핍으로 인하여 많은 윤리적 논쟁거리들을 야기했다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ABCNY,1960). 당시 이 보고서는 의회와 다음 대통령은 주요 사법적 윤리조항들을 개선함으로서 연방

후에야 상원의원의 급여를 올리는 법안에 서명하였다.

37) 미국에서 입법의 취지상 이해충돌 회피에 대한 제도화의 역사는 남북전쟁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남북전쟁 당시 링컨 대통령에 의하여 입법화되었다고 해서 소위 '링컨법(Lincoln Law)'이라는 별칭이 있는 '부정주장법(False Claims Act of 1863)'이 그 예이다(윤태범,2004:7).

정부들의 윤리시스템을 조사하고, 선물의 수수나 외부 고용 등과 같은 이슈들을 포함하는 새로운 윤리지침들을 제시할 것을 권고함(Kirby,1970).

○ 이에 따라 1961년 초반, 당시 케네디 대통령은 사법적인 윤리적 제한조치들을 포함하는 연방정부의 윤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발표함. 이어서 1962년 10월, 미국 의회는 뉴욕 변호사협회의 권고를 상당수 수용한,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입법의 하나로 평가되는 'Bribery and Conflict of Interest Act of 1962 '수정안을 통과시켰고, 케네디 대통령은 이 법안에 서명함(윤태범,2004:7-9). 이 법은 U.S Code Title 18조하에 가장 중요한 연방정부의 이해충돌 금지 조항들을 모아놓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38].

2) 백지신탁제도

○ 백지신탁제도가 활발하게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1953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등장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짐(윤태범, 2005: 126 -128). 즉 당시의 재정적 이해충돌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과 고위 연방공무원들은 재정적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백지신탁에 자신들의 재산을 신탁하기 시작하였음. 1978년 정부윤리법이 제정될 때까지, 역대 대통령 후보자들은 백지신탁 계약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일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법무부 및 상원 인준위원회(Confirmation

38)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section 202 : 연방 공무원들은 뇌물이나 불법적인 혜택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 section 203 : 의회의 구성원들은 연방정부의 일 처리와 관련하여 사적인 정당을 대변하는 지불을 받아서는 안된다.
- ection 205 : 연방 정부 공무원들은 연방정부의 일 처리와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대변해서는 안된다.
- section 207 : 전직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은 특정한 문제와 관련하여 연방기관들에 대하여 특정한 사적 당을 대변해서는 안된다.
- section 208 : 연방의 재정적 이해충돌 금지, 이것은 연방 공무원들이 재정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 section 209 : 외부로부터 보수 외에 추가적인 급여를 보충 받는 것을 금지한다.

Committee)와 협의하여 처리하곤 하였음.

○ 1977년 대통령 후보자와 대통령 지명자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윤리지침이 마련되었음. 이 지침은 대상자들에게 상세한 재정적 공개(Financial Disclosure)를 요구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재정적 이해의 충돌이라는 외양을 만들어내는 상황을 해소할 것을 요구함. 예를 들어서 고위 공직자로서의 경험을 이용하여 돈을 버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당시 대통령 당선자인 카터는 그의 후보자들과 지명자들이 정부를 떠난 1년 동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의 전직장을 대상으로 로비하지 못하도록 하였음. 약 30년 가까이 명료한 틀이 없는 상태에서 운용되던 백지신탁제도를 공식화하는 여론이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흐름의 결과 카터 대통령은 백지신탁[39]과 관련한 보다 엄격한 규정을 포함한 1978년 정부윤리법을 제정함. 그리고 정부윤리국(OGE)을 설치해 백지신탁제도 운영 권한을 부여함.[40].

○ 미국에서의 백지신탁 제도의 의미는 재정정보 공개제도와 이해충돌의 회피라는 제도를 통하여 제대로 이해됨. 이 2가지 제도의 적절한 조화가 바로 백지신탁으로 제도화된 것이기 때문임. 미 대법원의 판결의 표현을 빌면[41], "정부를 대신하여 일하는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사적인 재정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공정한 판단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임. 이해충돌은 이와 같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의 하나로서 성립됨.

---

39) 전형적인 백지신탁 계약은 대통령이나 고위직의 자산을 이들과는 독립적인 위치에 있는 피신탁자가 관리하도록 하는 약속의 일종이다. 신탁계약을 통해서 수탁자에게는 당해 공무원에게 자세한 거래내역을 통지하지 않고서도 신탁된 자산을 자유롭게 매각하거나 살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신탁"이라는 용어가 상징하듯이, 백지신탁은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신뢰"에 근거하여 운용되는 "신뢰" 유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40) 그러나 백지신탁제도 자체의 활용의 불편함 등에 대한 지적으로 이에 대한 보완 논의결과 1989년 윤리개혁법에 "처분 인증서(Certificate of Divestiture)"의 발행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연방윤리규정에 순응하기 위하여 재정적 이해가 걸려있는 자산을 매각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공무원들은, 자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면제받게 되었다.

41) *United States v. Mississippi Valley Generation Co,* 364 U.S. 520, 549(1960).

○ 이해충돌 규정의 적용대상 공무원으로부터 입직시의 재정보고서와 재직중 재정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이 자료는 감독직위에 있는 해당 기관의 윤리담당자(DAEO)에게 제출되며, 윤리담당자에 의하여 이해충돌의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으며, 만일 이해충돌이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심사를 받음(윤태범,2005: 126-127). 이해충돌이 있을 경우, 윤리협정(Ethics Agreement)을 맺게 되는데, 윤리협정의 준수와 관련하여 해당 공무원들은 관련 자료들을 DAEO에게 제출하여야 함[42].

○ 여기서 공무원의 재산이 심각한 이해충돌을 야기할 경우, 해당 공무원은 윤리감독관에 의하여 특정 자산을 처분할 것을 요구받음((5 C.F.R. §2635.403(b)). 이중 자격의 박탈(Disqualification) 혹은 기피가 가장 일반적인 윤리협정임. OGE는 이해충돌의 회피를 위하여 가능한한 기피를 권고함. 다만 이것이 상황에 부적절한 방법인 경우에는 기타의 방법을 권고함. 즉 적격한 신탁(Qualified Trust : 5 C.F.R. Part 2634. Subpart D)은 비용과 복잡성 때문에, 앞서 언급한 기피, 포기, 처분, 기타 협정이 부적절할 때 활용되는 방법임.

Ⅵ. 결론

○ 공직자의 존립의 근거는 공직자 본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할 것임. 그것은 공직 자체가 국민의 신탁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임. 따라서 공직자와 국민간의 신탁관계를 존속시키는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는 바로 '신뢰'임.

○ 그러나 최근 공직자와 국민들을 강력하게 연결시켜주는 '신뢰'를 찾기 힘든 실정임. 오히려 신뢰보다는 의심과 불신이 더 강력한 기제로서 작동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정부 자체에 대한 불신은 물론이고, 정책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이 사실임.

42) 5 U.S.C. app.§106(b)(3) ; 5 C.F.R.§2634.605(b)(5)(ⅱ)

○ 이와 같은 부정적 상황이 만들어진 이유로 여러 가지가 있음. 이중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되었던 부정적 공직사회의 문화와 공직자에 의한 각종 부패 사건의 발생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정부는 정부대로, 시민사회는 시민사회대로 그동안 많은 노력들을 하였음. 수많은 법, 제도적 장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공직자윤리법은 정부 주도로, 그리고 부패방지법은 시민사회 주도로 입법화된 대표적인 방안들임. 그러나 이 법들은 명칭의 그럴듯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흠결을 갖고 있으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최근 새 정부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각종 도덕성 관련 의혹들(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 피규제기관과의 담합과 감독 부실, 퇴직 후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사기업으로의 취업, 이해충돌을 야기하는 공직으로의 재진출 등)도 결국 이와 같은 법과 제도의 미비에 따른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공직자의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공직자가 재직 중 혹은 퇴직 후 직면하는 다양한 이해충돌의 효과적 해소에 있다는 점에서, 이를 위한 방향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특히 이와 같은 이해충돌 관련 논의들이 장관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기준과 절차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제에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과 기준, 절차의 제도화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참고로 고위 공직자의 임용 과정에서 이해충돌의 존재 여부 확인 및 해소를 핵심으로 하고 있는 미국의 상원 인준 대상 공직자의 임명 과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참고> 미국에서의 상원 인준 대상 공직자의 임용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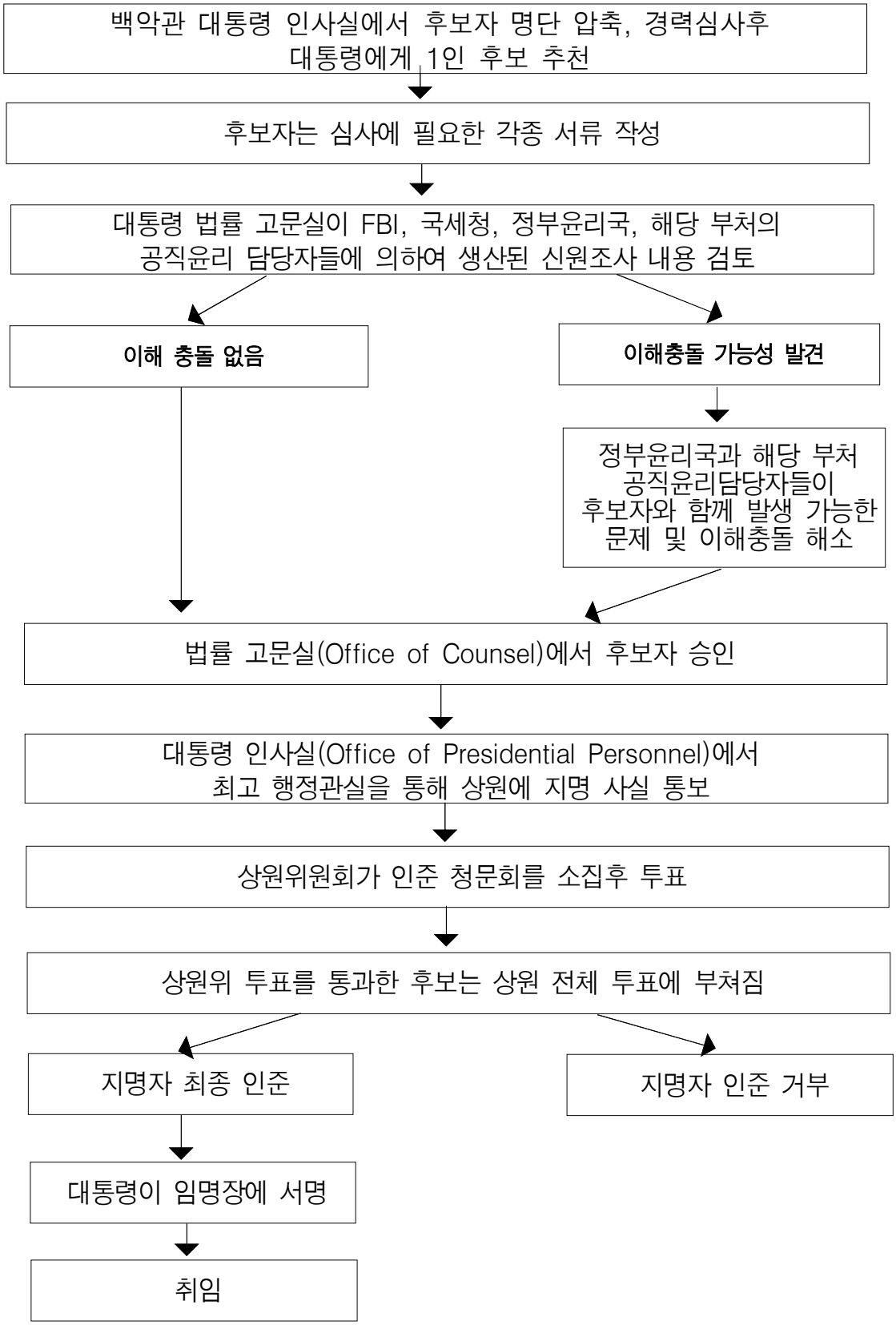

참고문헌

대한민국정부(1963), 공무원선서

_____(1969),공무원의 신조

_____(1980),공무원 윤리헌장

_____(1980),공직자윤리법

_____(1982),공무원 윤리헌장 실천강령

_____(2001),부패방지법

_____(2003),공무원행동강령

사회정화위원회(1988), 사회정화운동사.

윤태범(2010),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입법화과정에 관한 연구, GRI 논총,

_____(2005). 공무원 윤리 확보를 위한 직무상 이해충돌 회피에 관한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4권 2호.

_____(2004).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이해충돌 회피의 제도화 방안,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_____(2003). 공직자 윤리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4. 25).

_____(2002a). 공무원의 책임성 확보와 공무원 행동강령, 부패방지위원회 공청회 주제 발표논문.

_____(2002b). 공직자윤리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참여연대 공개토론회 발표.

참여연대(2010),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참여연대(2009),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참여연대(2008),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_____(2004), 참여연대 10년의 기록,

_____(2003a).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_____(2003b). 이해충돌 회피 제도화 토론회 자료집.

_____(1996), 부패방지법 토론회 자료집.

Academic Press(1998). *Encyclopedia of Applied Ethics.*

Anechiarico, Frank, James B. Jacobs(1996). *The Pursuit of Absolute Integrity*. Chicago : The

Univ. of Chicago Press.

Association of the Bar of the City of New York(1960), *Conflict of Interest and Federal Service.* Cambridge, MA:Harvard Univ. Press.

Atkinson, Michael M. & Maureen Mancuso.(1992). Edicts and Etiquette: Regulating conflict of interest in Congress and the House of Commons. *Corruption and Reform.* 7. pp.1-18.

Bowman, James S.(2001). From Code of Conduct to Code of Ethics. in Terry L. Cooper(2001). *Handbook of Administrative Ethics. Marcel.*

Cooper, terry L.(1998), *The Responsible Administrator*, Jossey-Bass.

Davis, Michael(1998). Conflict of Interest. in Academic Press (1998). *Encyclopedia of Applied Ethics.*

Hallgarth, Matthew W.(1998). Consequentialism and Deontology. *Encyclopedia of Applied Ethics.* Academic Press. pp.609-621,

Heidenheimer, Arnold, J.Michael Johnston, Victor T. Levine(1990), *Political Corruption*, transaction.

Hondeghem, Annie(1998). *Ethics and Accountability in a Context of Governance and New Public Management.* IOS Press.

Hood, C.(1991). "A Public Management for All Season". *Public Administration.*69 (spring): 3-19.

Kamensky, J. (1996). "Role of the "Reinventing Government" Movement in Federal Management Reform".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6(3): 247-255.

Kirby, James C.(1970), *Congress and the Public Trust*, New York:Atheneum.

Langseth, Petter, Rick Stapenhurst & Jeremy Pope(1997). The Role of a national Integrity System in Fighting Corruption. EDI(Economic Development Institute of The World Bank) Working Papers. 400/142.

Levy, Peter B.(1996), *Encyclopedia of the Reagan-Bush years*, Westport, CT:Greenwood Press,

Macy, John W. (1971), *Public Service : The Human Side of Government*, NY:Harper & Row.

OECD(2003). *Managing Conflict of Interest in the Public Service.*

_____(2000). *Trust in Government.*

_____(1999). *Public Sector Corruption.*

_____(1998).*Improving Ethical Conduct in the Public Service- Recommendation of the OECD Council.*

_____(1996). *Ethics in the Public Service : Current Issues and Practice.*

Office of Government Ethics(1999). *Standards of Ethical Employees of the Executive Branch.*

Plant, Jeremy F.(2001). Code of Ethics. in Terry L. Cooper(2001). *Handbook of Administrative Ethics. Marcel.*

President's Commission on Federal Ethics Law Reform(1989), *To Serve with Honor : Report of the President's Commission on Federal Ethics Law Reform.*

Pritchard, Jane(1998). Code of Ethics. in *Encyclopedia of Applied Ethics.* Academic Press. 527-34.

Roberts, Robert N.(2001). *Ethics in U.S. Government*. Greenwood Press.

Roberts, Robert N. & Marion T. Doss, Jr.(1997). *From Watergate to Whitehouse: The Public Integrity War*, Westport, CT: Praeger.

_____(1992). Public Service and Private Hospitality: A Case Study in Federal Conflict of Interest Reform,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2:260-270.

Selznick, P.(1992). *The Moral Commonwealth*. The Univ. of California Press.

Thompson, Dennis F.(1987). *Political Ethics and Public office.* Harvard Univ. Press.

U.S.A(1961), Executive Order 10939, To Provide a Guide on Ethical Standards to Government Officials.

____(1962), Bribery and Conflict of Interest Act.

____(1965), Executive Order 11222, Standards of Ethical Conduct for Government Officers and Employees.

____(1978), Ethics in Government Act.

____(1989), Executive Order 12674, Principles of Ethical Conduct for Government Officers and Employees.

____(1989), Ethics Reform Act.

____(1993). Executive Order 12834, Ethical Commitments by Executive Branch Appointees.

U.S.OGE(1996). *Public Financial Disclosure : A Reviewer's Reference.*

_____(1999). *Standards of Ethical Employees of the Executive Branch.*

_____(2003). *Compilation of Federal Ethics Laws.*

U.S. Senate(1978). *Memorandum.*

_____(2003). *Rules of Committee on Standards of Official Conduct.*

_____(2003). *Senate Ethics Manual.*

Walzer, M.(1973). Political Action : The Problem of Dirty Hands.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2(winter).

Zimmerman, Joseph(1994), *Curbing Unethical Behavior in Government,* Greenwood.

발제 2

참여연대 2013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제안

장유식 / 변호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공직자윤리법 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제안이유

○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막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산등록·공개제도를 통해 공직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 및 공개하고, 공직자에게 이해충돌방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로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주식백지신탁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현행법은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조항에 변호사, 세무사 등에 예외를 두어 로펌 등을 통한 변호사 등 퇴직공직자들의 전관예우를 막지 못하며,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 등의 범위와 그 업무연관성의 범위를 좁게 설정하고 있어 매년 업무유관기업에 취업하여 불법로비 등을 하고 불공정한 공무집행을 유발하고 있으나 효율적으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퇴직공직자의 청탁행위 등을 직접 규제하지 않아 퇴직공직자의 불법로비를 막지 못하고 있음.

○ 또,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경우, 광범위한 업무 연관성을 가진 1급 이상의 재산공개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백지신탁 심사를 받게 하여 매각 및 백지신탁 여부를 숙고하게 만들고, 이외의 백지신탁 대상자의 범위 또한 4급 이상

의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부서 관계자로 한정하였고, 주식과 마찬가지로 재산상의 가치가 높고 이해충돌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보유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어 심각한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해 있음.

○ 재산 등록 제도 역시 고지거부를 통해 손쉽게 직계존비속이 재산의 등록을 거부하여 재산을 은닉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불합리성이 존재함.

○ 한편, 대통령은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업무연관성이 크고, 영향력이 막대하며 전직 대통령에게는 근무기간 등에 상관없이 종신토록 연금급여와 의전을 제공하는 등 권한과 혜택이 크나, 전직대통령에게는 재산의 등록과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에 재산등록·공개에서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를 폐지하고 전직 대통령이 재직 시 부정한 방법을 통해 획득한 재산과 부정행위에 대한 대가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전직대통령의 재산의 등록과 공개를 규정하는 한편,

○ 고위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업무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 등의 종류와 규모 등을 넓히는 한 편,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에도 취업제한 업체로 포함시키고, 변호사 등에 대한 예외 규정을 폐지하고, 주식 백지신탁제의 대상과 적용 주식을 넓히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가하고, 현직 공직자가 부정한 청탁행위를 받는 행위와 퇴직공직자와 사적 만남을 제외한 접촉을 금지하고, 접촉여부를 보고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강화하여 현행법의 실효성 제고와 공직자의 윤리를 높이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구체화하였음. (안 제1조의2)

다. 재산등록의무자에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업무연관성이 크고, 영향력이 막대하며 임기 후에도 근무기간 등에 상관없이 종신토록 연금급여와 의전을 제공하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전직대통령을 재산등록·공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음. (안 제3조, 제10조)

라. 액면가로 등록하게 되어 있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이해관계자가 20%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회사매출액과 소유재산을 같이 신고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는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주식회사의 지분형태로 보유하여 은닉하거나 축소하여 신고할 수 없도록 하였음. 공직자의 재산등록방법을 변경하여 자신의 소득원, 재산의 취득경위, 재산의 취득일자 등을 표시하도록 하였음. (안 제4조)

마. 최초 재산등록 또는 재등록 이후 5년경과 후에는 재등록하여 재산등록이 누락되거나 오랜 기간 동안 재산가치의 변경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개선하였음. (안 제5조)

바. 재산공개대상자의 주식거래가 공개되도록 하여 재산공개를 통한 공직자의 감시가 원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음. (안 제6조의2, 제10조)

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 강화를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였음. (안 제9조)

자. 현행법에서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예외조항을 삭제하고 재산신고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음. (안 제12조)

차. 백지신탁 심사 대상자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한국은행, 공정거래위, 대검찰청, 감사원, 외교통상부, 방송통신위 등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확대하였고, 1급 이상의 재산공개 대상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백지신탁하도록 하였음. 이해충돌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식처럼 백지신탁 하도록 하였음. (안 제14조의4, 제14조의5, 제14조의6)

카. 기존 법률에서는 외국 정부로 부터 받은 선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일체의 금전적 이익을 직무관련자로 부터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무관련자와 금지되는 선물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 공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기타 친인척 등이 받은 선물도 공직자가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음. 공직자 상호간의 선물을 금지하고 예외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 (안 제15조의2)

타. 이해관계직무로 부터의 제척규정을 신설하여 직무관련자의 경우에는 그 직무로부터 제척되도록 하였음. (안 제16조의2)

파. 업무외의 취업제한규정과 소득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성실의 의무를 훼손할 수 있는 업무 외에 과도한 보상이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였음. (안 제16조의3, 제16조의4) 대부등의 제한을 통해 직권을 통한 대부 재정보증 등 일체의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음. (안 제16조의5)

하. 사기업체등만 취업제한 대상이었던 것을 시장형 공기업까지 확대하였

음.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과 밀접한 업무연관성의 범위를 재산공개대상자의 경우는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밀접한 업무 연관성의 범위로 확대해 취업을 제한하도록 강화하였음. 영리사기업체의 규모를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 또는 지난 3년간 연평균 외형거래액이 30억 원 이상인 기업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한 기업체 혹은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실적이 있는 기업체 등으로 법률에 규정하였음. 변호사 등이 법무법인등에 취업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삭제하였음.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퇴직공직자가 영리사기업체, 협회, 변호사 등에 취업을 원할 경우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한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도록 규정하였음(안 제17조, 제17조의2)

갸. 취업승인은 공직자가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함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취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이해충돌로 침해되는 공익을 비교하여 그 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함. (안 제18조)

냐. 퇴직공직자의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소속기관과 이해충돌을 일으키는 행위를 제한하였음. 공직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퇴직공직자의 청탁행위, 업무와 관련하여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행위, 퇴직 전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쟁송행위의 대리 등을 금지하였음. 공직자는 퇴직공직자와 사적인 만남을 제외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접촉할 수 없도록 하고 재산등록대상의 공직자가 퇴직공직자와 접촉한 경우 주기적으로 만남의 형태와 목적을 보고하도록 하였음. (안 제18조의4)

댜. 등록재산과 직무의 이해관계 충돌 또는 윤리문제가능성이 인정되었으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금지되는 선물 등을 받은 경우, 금지된 선물을 신고하지 않거나 처리절차를 어긴 경우, 공직자 상호간에 선물 등을 제공하거나 2항을 위반하여 선물 등 이익의 제공을 알선

한 경우, 제척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고지하지 않거나 이해관계직무로 부터 제척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 외에 취업한 경우,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 외 소득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직권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재정보증 등 일체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얻도록 한 경우, 퇴직공직자의 청탁을 받고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 할 수 있도록 하였음. (안 제22조)

랴. 고의로 선물을 신고하지 않거나 절차에 따라 반환 등의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안 제28조의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직자가 대부제한을 위반하였을 경우(안 제28조의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음.

법률 제 호

공직자윤리법 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다음과 같은 청렴의무를 가진다.

1. 공직자는 정부 또는 소속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임의로 정부 또는 그 기관을 구속하는 약속을 할 수 없다.

2. 공직자는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공직을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3. 공직자는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여서도 안 된다.

4 .공직자는 어떠한 개인이나 조직에게도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

5. 공직자는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을 잘 보호, 보존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6. 공직자는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금 또는 기타 사례 명목의 재산상의 이익을 이 법에 위반하여 취해서는 안 된다.

제3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전직 대통령

제4조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주식 중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권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 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은 재산등록 기준일의 최종거래가격(거래가 재산등록 기준일 전에 마감된 경우에는 마감일의 최종거래가격.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 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을 말한다), 그 외의 주식은 액면가 (다만 본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20%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 회사의 매출액과 소유재산 등을 같이 신고한다.)

제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별로 재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소명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보(轉補)·강임(降任)·강등(降等) 또는 퇴직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3년(퇴직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전보·강임·강등 또는 퇴직 등을 한 날 이후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변동사항 신고 이후의 변동사항을 신고함으로써 등록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최초 등록 또는 재등록 5년경과 후에는 재산내역전체를 재등록하여야 한다.

1. 국회의원과 그 밖의 국회 소속 공무원: 국회사무처
2. 법관과 그 밖의 법원 소속 공무원: 법원행정처
3.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헌법재판

소사무처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5. 정부의 부·처·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등의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그 부·처·청

6. 감사원 소속 공무원: 감사원사무처

7.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국가정보원

8.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그 지방자치단체

9.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그 지방의회

10.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그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11.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과 그 소속 공무원: 그 교육위원회

12.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그 공직유관단체를 감독하는 부·처·청. 다만,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등록한다.

13. 그 밖의 등록의무자,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처·청 소속 공무원과 감사원·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으로서 제10조제1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하는 공직자: 안전행정부

제6조의2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의2 제1항에 제5호를 신설하고 제6항, 제7항,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고발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심사결과 공직자의 직무가 공직자 및 그의 직계존비속의 등록재산과 금전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거나 혹은 윤리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인정된다면 공직자에게 그와 같은 견해를 통보하고 의견청취의 기회를 부여한 후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처분을 결정하여 이를 공직자에게 명해야 한다.

1. 공직자의 회피, 전직 및 당해 직위의 해제

2. 이해 충돌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당해 재산의 처분

3. 백지위임신탁 등 기타 이해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⑦ 제6항2호 혹은 3호의 조치 중 인사와 관련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해충돌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인사권을 가진 소속기관의 장에게 명령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기관의 장은 한 달 이내에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게 통보해야 한다.

⑧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 6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보 또는 공보에 기재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일간 신문광고란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할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10조제1항의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을"을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 및 제6조의2 주식거래신고내역을"로 하

고 같은 항의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전직 대통령

제12조 제4항과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장의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2. 주식 등의 매각 또는 신탁

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 (주식 등의 매각 또는 신탁) ① 등록의무자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와,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교통국토부, 한국은행, 공정거래위, 대검찰청, 감사원, 외교부,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심사 대상자"라 한다)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모두가 보유한 주식 및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게 된 날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취득한 날(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제6조의3제1항·제2항에 따른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 현재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대상자가 된 날 또는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을,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 대상자의 경우, 제14조의5제7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식의 경우

가. 당해 주식의 매각

나. 당해 주식에 대한 신탁 또는 투자신탁(이하 "주식백지신탁"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의 체결

2.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가.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의 포기

나.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후 매각

다.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후 주식백지신탁

라.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의 양도권 취득 후 주식백지신탁

② 제1항제1호나목과 제2호다목에 의한 주식백지신탁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음 신탁된 주식 등을 처분할 것. 다만, 60일 이내에 주식 등을 처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수탁기관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주식 등의 처분시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의 연장기간은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2. 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하지 아니할 것

3. 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수탁기관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미리 신탁재산의 기본적인 운용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4. 제14조의10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탁자가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

5.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할 것

6. 수탁기관은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일 것. 다만, 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회사는 제외한다.

③ 제1항제2호라목의 경우 상법 제340조의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주식매수선택권부여 법인은 공개대상자등 또는 이해관계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함. 다만 공개대상자등 또는 이해관계자의 책임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손해를 보상해야 하며 손해보상의 범위는 주식매수선택권 처분으로 발생한 신탁재산에 한정하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 이전에는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함께 하는 경우 등록하여야 하는 주식 등 종류와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포기하거나 주식을 매각한 날 또는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⑤ 대상자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포기 또는 행사와 주식백지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로 인한 재산변동사항을 제6조 및 제11조에 따른 신고에 포함하여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의 체결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그 신탁재산은 제6조 및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주식 등을 포기하거나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한 사실의 신고 및 공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신고사항의 심사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3항,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제14조의5의제1항과 같은 조 제8항, 제9항, 제10항의 “주식의”를 “주식 등의”로 한다.

제14조의6의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의 “주식을”을 “주식 등을”로 한다.

제3장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 선물신고 및 금지된 선물의 처리절차

제15조의제1항과 같은 조 “공무원(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에서 같다)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을 “공무원(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에서 같다)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하“공직자등”로 한다)”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공직자등은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어떠한 선물, 향응, 숙박, 여행, 회원권제공 등 일체의 금전적 이익(이하 선물 등)을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아서는 안 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익의 제공은 전항에서 제외한다.

1. 식사가 아닌 커피, 음료수 등 간소한 음식 또는 다과

2. 단지 전시를 위해 제공되는 트로피, 명패 등으로 경미한 가치를 지닌 물건과 인사장

3.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되는 대부

4. 일반 국민 또는 모든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유리한 조건과 상업적 할인 등의 기회와 이익

5.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경연이나 추첨에서 받게 되는 보상 또는 상품

6. 종전 직장에서 계속적으로 받게 되는 연금 기타 이익

7. 직무상의 불편부당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학 등 기관에서 수여되는 명예상의 학위 기타 자격

8.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선물

③ 제1항의 직무관련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 기관에 대한 일정한 작용 및 조치를 구하는 자

2. 소속 기관과 업무상 관계를 맺고 있거나 맺으려 하는 자

3. 소속 기관의 규제 대상인 자

4. 공직자등의 직무상의 권한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진 자

④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등도 공직자등이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1. 해당 공직자등의 부모, 배우자, 자녀 기타 친인척

2. 해당 공직자등의 지정, 권고 등에 따른 특정 재단 또는 단체

3. 기타 해당 공직자등의 지정, 권고에 따른 제3자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 (금지된 선물들의 처리) ① 전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선물 등을 제공받은 공직자등은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상급자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전조에 의해 금지된 선물 등을 받은 자는 즉시 그 제공자에게 그 선물 등을 반환하거나 시장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그 시장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 물품의 소매가격을 시장가격으로 볼 수 있다.

③ 그 선물 등이 쉽게 소멸하는 것이거나 제공자 또는 그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으로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공직자는 그 소속기관의 상급자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 국고에 귀속시키거나 파기한다. 국고에 귀속된 선물 등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향응, 숙박, 여행 기타 무형의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제공자에게 그 시장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⑤ 반환 또는 보상에 따른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고 그 제공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4. (공직자등 상호간의 선물 등)

① 공직자등은 상급자 또는 다른 공직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선물 등을 제공할 수 없다.

② 공직자등은 다른 공직자등의 부탁을 받아 상급자 또는 다른 공직자에게 선물 기타 이익의 제공을 알선할 수 없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 제1항 및 제2항의 예외로 한다.

1. 수명의 공직자등 사이에 나누어 먹거나 사용할 수 있는 식품, 음료수 등

2. 결혼, 질병, 출산, 생일 등에 주어지는 의례적 선물 등의 이익

3. 퇴직, 사직, 전근 등 상하관계의 변동에 따른 의례적 선물 등의 이익

4. 주고받는 공직자등 상호간에 그 선물 등의 이익의 제공을 합당하게 만드는 개인적 관계가 있는 경우

제3장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이해충돌의 회피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이해관계 직무로부터의 제척) ① 공직자등이 자신이 수행하는 특정한 직무가 자신의 경제적 이해와 연결되어 있음이 직접적이고 명백한 경우이거나 자신의 친족, 호주, 가족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가 제15조의2제3항의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그 직무로부터 제척된다.

② 전항에서 특정한 직무라 함은 해당 공직자등의 재량행위, 결정, 또는 조치가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공직자등은 스스로 그 소속기관의 상급자에게 고지하고 허가를 얻어 그 직무를 회피할 수 있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 (업무 외 취업제한)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임명권자에 의하여 보임된 직책을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회사, 조합, 기타 다른 영리법인에 부속되거나 고용되어 보상받는 행위

2. 그의 성명이 전호의 각 조직 및 기관에 의하여 사용되는 행위

3. 소속기관에의 사전통지나 승인 없이 보상을 받고 강의하는 행위

제1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4. (업무 외 소득제한) ① 전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 외 활동으로 인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에도 그 업무 외 연소득은 연 급여총액의 15%를 넘지 못한다.

②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순수한 경제적 활동으로 인하여 얻는 개인소득은 위 소득제한금액에서 제외한다.

③ 전1항의 소득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명하지 못한 재산은 불법수익으로 본다.

제1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5. (대부등의 제한) 공직자등은 직권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 재정보증 등 일체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퇴직공직자의 관련 기업체 등 취업제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하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등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따른 법률」 제5조에 의한 시장형 공기업(이하 "기업체등"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으며 아래 7호의 경우에는 회사 등의 규모에 관계없이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

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지난 3년간 연평균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30억 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2. 제1호에 따른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3. 연간 외형거래액이 30억 원 이상인「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

4. 연간 외형거래액이 30억 원 이상인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5. 연간 외형거래액이 30억 원 이상인「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6. 연간 외형거래액이 30억 원 이상인「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한 기업체 혹은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실적이 있는 기업체

8.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가 인수합병이나, 명의변경, 신규사업자 등록 등으로 이름이나 대표자가 변경되었으나 해오던 사업을 지속하는 사기업체

② 제1항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인 경우를 말한다.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 기업체등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사건과 관계되는 업무

8. 기업체에 재산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정과 개정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9.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10.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를 불문하고 사기업체등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사기업체등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④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하였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등이 사건을 수임(「변호사법」 제3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임을 포함한다)하거나 회계법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세무사법」 제2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취업심사대상자가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는 해당 법무법인등이나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의 업무와 제1항에 따른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퇴직공직자의 자유 및 권리 등 사익과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한 공익 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제4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업 승인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경우에 해당 업무 처리 등의 건수, 업무의 빈도 및 비중 등을 고려하여 해당 취업심사대상자의 권리가 불합리하게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①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등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17조제2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취업심사대상자가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받거나 제2항에 따라 취업승인의 신청을 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취업승인은 공직자가 기업체 등에 취업함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취

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이해충돌로 침해되는 공익을 비교하여 그 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거쳐 취업을 한 경우에도 제16조의4에 의한 이해충돌 활동의 제한을 받는다.

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4(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① 퇴직한 공직자등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각호에 해당하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호의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경과한 기간에 관계없이 해서는 안 된다.

1.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퇴직 전 소속기관의 직원을 상대로 한 청탁행위

2. 퇴직 전 소속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에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행위

3. 퇴직 전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쟁송행위의 대리

4. 퇴직 전 소속기관 및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을 일으키는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공직자등은 소속기관의 퇴직공직자로부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청탁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퇴직공직자등과 사적인 만남을 제외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접촉해서는 안 된다. 재산등록대상의 공직자등은 퇴직공직자등과 접촉한 경우 주기적으로 만남의 형태와 목적을 보고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된 사항과 수사기관에 통보한 사실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이를 정기적으로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의 형식이나 방법 등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신고자의 신분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

⑤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신고로 인하여 소속 기관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징계 등)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사유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조제1항(12월 중에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의 변동사항 신고에 관한 같은 조 제3항을 포함한다)·제8항, 제6조의2 및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동사항 신고 또는 주식거래내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자료의 첨부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조제13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 대하여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4. 제8조제1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8조의2의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 재산과 직무의 이해관계충돌 또는 윤리문제 가능성이 인정되었으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제10조제3항(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한 경우

7. 제12조제1항(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위등록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한 경우

8. 제12조제2항(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등록사항 심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3조(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재산등록사항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경우

10. 제14조(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재산등록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11. 제14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14조의6을 위반하여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14조의7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14. 제14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한 경우

15. 제14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백지신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16. 제15조를 위반하여 외국에서 받은 선물 또는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을 신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15조의2의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되는 선물 등을 받은 경우

18. 제15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된 선물을 신고하지 않거나 처리절차를 어긴 경우

19. 제15조의4의1항을 위반하여 공직자 상호간에 선물 등을 제공하거나 2항을 위반하여 선물 등 이익의 제공을 알선한 경우

20. 제16조의2제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척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고지하지 않거나 이해관계직무로부터 제척하지 아니한 경우

21. 제16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 외에 취업한 경우

22. 제16조의4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 외 소득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23. 제16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권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 재정보증 등 일체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얻도록 한 경우

24. 제16조의6의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퇴직공직자의 청탁을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25. 제1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6. 제1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한 경우

제2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3. (신고의무 불이행의 죄) 고의로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선물을 신고하지 않거나 절차에 따라 반환 등의 처리를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4. (대부제한 위반의 죄) 제16조의5를 위반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신설>	제1조의2. (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다음과 같은 청렴의무를 가진다. 1. 공직자는 정부 또는 소속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임의로 정부 또는 그 기관을 구속하는 약속을 할 수 없다. 2. 공직자는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공직을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3. 공직자는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여서도 안 된다. 4. 공직자는 어떠한 개인이나 조직에게도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 5. 공직자는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을 잘 보호, 보존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6. 공직자는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금 또는 기타 사례 명목의 재산상의 이익을 이 법에 위반하여

	취해서는 안 된다.
제3조 (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 (등록의무자) ①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신설>	1의2.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전직 대통령
2.~13. (생략)	2.~1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 (등록대상재산) ①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4조 (등록대상재산) ①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1.~6. (생략)	③ 1.~6. (현행과 같음)
7. 주식 중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권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 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	7. ---------- ---------- ---------- ---------- ----------

로 거래되는 주식은 재산등록 기준일의 최종거래가격(거래가 재산등록 기준일 전에 마감된 경우에는 마감일의 최종거래가격.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 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을 말한다), 그 외의 주식은 액면가	---------- 그 외의 주식은 액면가 (다만 본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20%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 회사의 매출액과 소유재산 등을 같이 신고한다.)
8.~14. (생략)	8.~14.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에 따른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별로 재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을 기재하거나 소명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별로 재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소명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제5조 (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 시기 등) ①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제5조 (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 시기 등) ① ----------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보(轉補)·강임(降任)·강등(降等) 또는 퇴직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3년(퇴직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전보·강임·강등 또는 퇴직 등을 한 날 이후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변동사항 신고 이후의 변동사항을 신고함으로써 등록을 갈음할 수 있다.	---------- ---------- ---------- ---------- ---------- ---------- ---------- -------. 다만, 최초 등록 또는 재등록 5년경과 후에는 재산내역전체를 재등록하여야 한다.
1.~13. (생략)	1.~13.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의2 (주식거래내역의 신고) ① 제10조제1항 각 호의 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등록의무자는 제6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 변동사항 신고 시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식의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주식거래	제6조의2 (주식거래내역의 신고) ① -- ---------- ---------- ---------- ----------.

내용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주식거래의 신고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의2 (심사결과의 처리)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 결과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심사결과의 처리) ① ----------.
1.~4. (생략)	1.~4. (현행과 같음)
<신설>	5. 고발
②~⑤ (생략)	②~⑤ (현행과 같음)
<신설>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심사결과 공직자의 직무가 공직자 및 그의 직계존비속의 등록재산과 금전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거나 혹은 윤리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인정된다면 공직자에게 그와 같은 견해를 통보하고 의견청취의 기회를 부여

	한 후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처분을 결정하여 이를 공직자에게 명해야 한다. 1. 공직자의 회피, 전직 및 당해 직위의 해제 2. 이해 충돌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당해 재산의 처분 3. 백지위임신탁 등 기타 이해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⑦ 제6항2호 혹은 3호의 조치 중 인사와 관련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해충돌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인사권을 가진 소속기관의 장에게 명령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기관의 장은 한 달 이내에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게 통보해야 한다. ⑧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보 또는 공보에 기재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일간 신문광고란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 (공직자윤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	제9조 (공직자윤리위원회) ① ---------- ---------- ---------- ----------.
②~⑤ (생략)	②~⑤ (현행과 같음)
<신설>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할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⑥ 7항으로 변경	⑦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법과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조 (등록재산의 공개)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기간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제10조 (등록재산의 공개) ① ---------- ---------- ---------- ---------- 신고내용 및 제6조의2 주식거래 신고내역을 ----- ----------.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생략) <신설>	1. (현행과 같음) 1의2.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전직 대통령
2.~13. (생략)	2.~13. (현행과 같음)
②~④ (생략)	②~④ (현행과 같음)
제12조 (성실등록의무 등) ① 등록의무자는 제4조에서 규정하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성실등록의무 등) ①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으며 3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등록의무자는 고지거부 사유를 밝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고지거부에 관한	④~⑤ 삭제

허가신청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의2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제2장의2 주식 등의 매각 또는 신탁
제14조의4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① 등록의무자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공개대상자등"이라 한다)은	제14조의4 (주식 등의 매각 또는 신탁) ① ----------공개대상자와,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교통국토부, 한국은행, 공정거래위, 대검찰청, 감사원, 외교부,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심사 대상자"이라 한다)등의 대상자는 ----------말한다.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 원 이상 5천만원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게 된 날(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제6조의3제1항·제2항에 따른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 현재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 원 이상 5천	---------- 주식 및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주식등"이라 한다) 중 주식의 ----------초과하게 된 날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취득한 날(대상자등이 된 날 ---------- 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을,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만원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을,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5제7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다음 각호, 각목의 ----------다만, 심사대상자의 경우 제14조의5제7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주식의 매각	1. 주식의 경우
<신설>	가. 해당 주식의 매각
	나. 해당 주식에 대한 신탁 또는 투자신탁(이하 "주식백지신탁"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의 체결
<신설>	2.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가.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포기

	나.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후 매각 다.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후 주식백지신탁 라.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양도권 취득 후 주식백지신탁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신탁 또는 투자신탁(이하 "주식백지신탁"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의 체결 가.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음 신탁된 주식 을 처분할 것. 다만, 60일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수탁기관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주식의 처분시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의 연장기간은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나목과 제2호다목에 의한 주식백지신탁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주식 등----------주식 등----------주식 등----------. 2. ----------
나.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하지 아니할 것	

다.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수탁기관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미리 신탁재산의 기본적인 운용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3. ---------- ---------- ---------- ---------- --------.
라. 제14조의10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탁자가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	4. ---------- ----------
마.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할 것	5. ---------- ----------
바. 수탁기관은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일 것. 다만,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	6. ---------- ---------- ---------- ------ ---------- ----------

계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회사는 제외한다.	---------- ---------- ----------.
<신설>	③ 제1항제2호라목의 경우 상법 제340조의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주식매수선택권부여법인은 대상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함. 다만 심사대상자등 또는 이해관계자의 책임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손해를 보상해야 하며 손해보상의 범위는 주식매수 선택권 처분으로 발생한 신탁재산에 한정하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 이전에는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함께 하는 경우 등록하여야 하는 주식의 종류와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매각한 날 또는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④ ----------주식 등의 종류와 가액은 ---------- 주식매수선택권을 포기하거나 주식을 ----------.

③ 공개대상자등은 주식백지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로 인한 재산변동사항을 제6조 및 제11조에 따른 신고에 포함하여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⑤--대상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포기 또는 행사와 주식백지신탁계약의 ----------.
④ 제1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의 체결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그 신탁재산은 제6조 및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
⑤ 제1항에 따라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한 사실의 신고 및 공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주식 등을 포기하거나 ----.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신고사항의 심사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3항,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⑧ ----------.
제14조의5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①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둔다.	제14조의5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① ---------- 주식 등의 ----------.

②~⑦ (생략)	②~⑦ (현행과 같음)
⑧ 주식의 직무관련성은 주식 관련 정보에 관한 직접적·간접적인 접근 가능성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⑧ 주식 등의 ---------- ---------- ---------- ---------- -----.
⑨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개대상자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서면질의를 할 수 있다.	⑨ ---------- 주식 등의 -------- ---------- ----------.
⑩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단체 및 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단체 및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⑩ ---------- 주식 등의 ------ ---------- ---------- ----------.
⑪ (생략)	⑪ (현행과 같음)
제14조의6 (주식취득의 제한) ①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는 공개대상자등과 이해관계자 중 어느 누구도 새로 주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6 (주식취득의 제한) ① ------ ---------- 주식 등을 ----------.

② 공개대상자등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제1항에 따라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에 상속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알게 된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직접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그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상자등은---------- ---------- ----- 주식 등을 ---------- ---------- ---------- 주식 등을 ---------- ---------- 주식 등을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3장 선물신고	제3장 선물신고 및 금지된 선물의 처리절차
제15조(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① 공무원(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에서 같다)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	제15조(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① 공무원(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에서 같다)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하“공직자등”로 한다)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신설>	제15조의2 (금지되는 선물 등) ① 공직자등은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어떠한 선물, 향응, 숙박, 여행, 회원권제공 등 일체의 금전적 이익(이하 선물 등)을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아서는 안 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익의 제공은 전항에서 제외한다. 1. 식사가 아닌 커피, 음료수 등 간소한 음식 또는 다과 2. 단지 전시를 위해 제공되는 트로피, 명패 등으로 경미한 가치를 지닌 물건과 인사장 3.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되는 대부 4. 일반 국민 또는 모든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유리한 조건과 상업적 할인 등의 기회와 이익 5.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경연이나 추첨에서 받게 되는 보상 또는 상

	품 6. 종전 직장에서 계속적으로 받게 되는 연금 기타 이익 7. 직무상의 불편부당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학 등 기관에서 수여되는 명예상의 학위 기타 자격 8.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선물 ③제1항의 직무관련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 기관에 대한 일정한 작용 및 조치를 구하는 자 2. 소속 기관과 업무상 관계를 맺고 있거나 맺으려 하는 자 3. 소속 기관의 규제 대상인 자 4. 공직자등의 직무상의 권한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진 자 ④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등도 공직자등이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1. 해당 공직자등의 부모, 배우자, 자녀 기타 친인척 2. 해당 공직자등의 지정, 권고 등

	에 따른 특정 재단 또는 단체 3. 기타 해당 공직자등의 지정, 권고에 따른 제3자
<신설>	제15조의3 (금지된 선물들의 처리) ① 전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선물 등을 제공받은 공직자는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상급자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전조에 의해 금지된 선물 등을 받은 자는 즉시 그 제공자에게 그 선물 등을 반환하거나 시장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그 시장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 물품의 소매가격을 시장가격으로 볼 수 있다. ③ 그 선물 등이 쉽게 소멸하는 것이거나 제공자 또는 그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으로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공직자는 그 소속기관의 상급자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 국고에 귀속시키거나 파기한다. 국고에 귀속된 선물 등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향응, 숙박, 여행 기타 무형의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제공자에게 그 시장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⑤ 반환 또는 보상에 따른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고 그 제공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제15조의4 (공직자 등 상호간의 선물 등) ① 공직자등은 상급자 또는 다른 공직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선물 등을 제공할 수 없다. ② 공직자는 다른 공직자의 부탁을 받아 상급자 또는 다른 공직자에게 선물 기타 이익의 제공을 알선할 수 없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 제1항 및 제2항의 예외로 한다. 1. 수명의 공직자등 사이에 나누어 먹거나 사용할 수 있는 식품, 음료수 등 2. 결혼, 질병, 출산, 생일 등에 주어지는 의례적 선물 등의 이익 3. 퇴직, 사직, 전근 등 상하관계의 변동에 따른 의례적 선물 등의 이

	익
	4. 주고받는 공직자등 상호간에 그 선물 등의 이익의 제공을 합당하게 만드는 개인적 관계가 있는 경우
<신설>	제3장의2 이해충돌의 회피
<신설>	제16조의2 (이해관계 직무로 부터의 제척) ① 공직자등이 자신이 수행하는 특정한 직무가 자신의 경제적 이해와 연결되어 있음이 직접적이고 명백한 경우이거나 자신의 친족, 호주, 가족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가 제15조의2제3항의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그 직무로부터 제척된다.
	② 전항에서 특정한 직무라 함은 해당 공직자등의 재량행위, 결정, 또는 조치가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공직자등은 스스로 그 소속기관의 상급자에게 고지하고 허가를 얻어 그 직무를 회피할 수 있다.
<신설>	제16조의3 (업무 외 취업제한)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임명권자에 의

	하여 보임된 직책을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회사, 조합, 기타 다른 영리법인에 부속되거나 고용되어 보상받는 행위 2. 그의 성명이 전호의 각 조직 및 기관에 의하여 사용되는 행위 3. 소속기관에의 사전통지나 승인 없이 보상을 받고 강의하는 행위
<신설>	제16조의4 (업무 외 소득제한) ① 전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 외 활동으로 인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에도 그 업무 외 연소득은 연 급여총액의 15%를 넘지 못한다. ②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순수한 경제적 활동으로 인하여 얻는 개인소득은 위 소득제한금액에서 제외한다. ③ 전1항의 소득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명하지 못한 재산은 불법수익으로 본다.
<신설>	제16조의5 (대부등의 제한) 공직자등은 직권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부, 재정보증 등 일체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제4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	
제17조 (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하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등(이하 "사기업체등"이라 한다)에 ----------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퇴직공직자의 관련 -기업체 등 취업제한) ① ---------- ---------- ---------- ---------- -------사기업체 등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따른 법률」 제5조에 의한 시장형 공기업(이하 "기업체등"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으며 아래 7호의 경우에는 회사 등의 규모에 관계없이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공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1.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 이거나 지난 3년간 연평균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공급가액을 말한다.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3

	0억 원 ----------
2. <동일>	2.
3.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	3. 연평균 -------- 30억 원 ----------
4.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4. 연평균 -------- 30억 원 ----------
5.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5. 연평균 -------- 30억 원 ----------
6.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6. 연평균 -------- 30억 원 ----------
7. <신설>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한 기업체 혹은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실적이 있는 기업체
	8.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가 인수합병이나, 명의변경, 신규사업자 등록 등으로 이름이나 대표자가 변경되었으나 해오던 사업을 지속하는 기업체
8. <신설>	
②<현행>	② ----

1.	1.
2.	2.
3.	3.
4.	4.
5.	5.
6.	6.
7. 사기업체등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7. 기업체등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사건과 관계되는 업무
	8. 기업체등이 재산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정과 개정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9.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8. <10호로 변경>	10.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현행>	③ <현행>
④ <현행>	④ <현행>
⑤ <현행>	⑤ <현행>
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	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

승인) ①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 ② <현행> ③ <현행> ④ <신설>	승인) ①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등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 ② <현행> ③ <현행> ④ 취업승인은 공직자가 기업체 등에 취업함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취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이해충돌로 침해되는 공익을 비교하여 그 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거쳐 취업을 한 경우에도 제16조의4에 의한 이해충돌 활동의 제한을 받는다.
제18조의4(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①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4(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①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각호에 해당하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

	호의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경과한 기간에 관계없이 해서는 안 된다.
1. <신설>	1.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퇴직 전 소속기관의 직원을 상대로 한 청탁행위
2. <신설>	2. 퇴직 전 소속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에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행위
3. <신설>	3. 퇴직 전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쟁송행위의 대리
4. <신설>	4. 퇴직 전 소속기관 및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을 일으키는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 제1항에 따른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때에는 이를 ----소속 기관	② 공직자등은 소속기관의 퇴직공직자로부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청탁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퇴직공직자등과 사적인 만남을 제외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접촉해서는 안 된다. 재산등록대상의 공직자등은 퇴직공직자등과 접촉한 경우 주기적으로 만남의 형태와 목적을 보고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때

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에는 이를 즉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된 사항과 수사기관에 통보한 사실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된 사항과 수사기관에 통보한 사실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이를 정기적으로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의 형식이나 방법 등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현행>	④ <현행>
⑤ --	⑤ --
⑥ --	⑥ --
제6장 징계 및 벌칙	제6장 징계 및 벌칙
제22조 (징계 등)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사유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 (징계 등) ----------.

1.~4. (생략)	1.~4. (현행과 같음)
5. <신설>	5. 제8조의2의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 재산과 직무의 이해관계 충돌 또는 윤리문제 가능성이 인정되었으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5~15. <6~16호로 변경>	6.~16. (내용 현행과 같음)
<신설>	17. 제15조의2의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되는 선물 등을 받은 경우
	18. 제15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된 선물을 신고하지 않거나 처리절차를 어긴 경우
	19. 제15조의4의1항을 위반하여 공직자 상호간에 선물 등을 제공하거나 2항을 위반하여 선물 등 이익의 제공을 알선한 경우
	20. 제16조의2제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척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고지하지 않거나 이해관계직무로 부터 제척하지 아니한 경우
	21. 제16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 외에 취업한 경우
	22. 제16조의4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 외 소득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23. 제16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권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 재정보증 등 일체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얻도록 한 경우 24. 제16조의6의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퇴직공직자의 청탁을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16.~17.<25~26호로 변경>	25.~26. (내용 현행과 같음)
<신설>	제28조의3 (신고의무 불이행의 죄) 고의로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선물을 신고하지 않거나 절차에 따라 반환 등의 처리를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제28조의4 (대부제한 위반의 죄) 제16조의5를 위반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신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첨삭표시안

삭제는 ~~삭제~~ 표기, 추가는 밑줄로 구분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다음과 같은 청렴의무를 가진다.

1. 공직자는 정부 또는 소속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임의로 정부 또는 그 기관을 구속하는 약속을 할 수 없다.
2. 공직자는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공직을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3. 공직자는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여서도 안 된다.
4. 공직자는 어떠한 개인이나 조직에게도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
5. 공직자는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을 잘 보호, 보존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6. 공직자는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금 또는 기타 사례 명목의 재산상의 이익을 이 법에 위반하여 취해서는 안 된다.

제2조(생활보장 등) 국가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공직윤리의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7.29>

④ 퇴직공직자는 재직 중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

제3조(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1.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1-2.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전직 대통령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실 경호공무원
5. 법관 및 검사
6.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7.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8.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대학원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교육장 및 교육위원
9.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및 지방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10.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 이라 한다)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12.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임원

13.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은행
2. 공기업
3.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5.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동의·추천·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11.7.29>

1. 본인
2.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

②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2. 광업권·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3. 다음 각 목의 동산·증권·채권·채무 및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
   가.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수표를 포함한다)
   나.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예금
   다.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주식·국채·공채·회사채 등 증권
   라.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채권

마.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채무

바.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을 포함한다)

사.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아.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골동품 및 예술품

자.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차.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카. 자동차 · 건설기계 · 선박 및 항공기

4. 합명회사 ·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5. 주식매수선택권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재산의 종류별 가액(價額)의 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또는 실거래가격
2.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
3. 상가 · 빌딩 · 오피스텔, 그 밖의 부동산은 대지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산정한 가액과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 중 최고가액(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함께 쓴다)으로 산정한 가액의 합계액 또는 실거래가격
4.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는 실거래가격이나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 · 수량 · 내용 등 명세
5. 현금 · 예금 · 채권 및 채무는 해당 금액
6. 국채 · 공채 · 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액면가
7. 주식 중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권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은 재산등록 기준일의 최종거래가격(거래가 재산등록 기준일 전에 마감된 경우에는 마감일의 최종거래가격.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을 말한다), 그 외의 주식은 액면가(다만 본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20%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 회사의 매출액과 소유재산 등을 같이 신고한다)
8. 합명회사 ·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은 출자가액과 지분비율 및 최근 사업연도의 회사 연간매출액

9.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을 포함한다)은 실거래가격이나 신고일 현재의 시장가격 그리고 종류 · 함량과 중량
10. 보석류는 실거래가격이나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 · 크기 · 색상 등 명세
11. 골동품 및 예술품은 실거래가격이나 작가 · 크기를 고려한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 · 크기 · 작가 및 제작연대 등 작품의 명세
12. 회원권은 취득가액. 다만, 골프회원권은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또는 실거래가격
13. 자동차 · 건설기계 · 선박 및 항공기는 실거래가격이나 감가상각 등을 고려한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 · 제작연도 · 제작회사 · 등록번호 등 명세
14. 주식매수선택권은 받을 주식의 종류 및 수량, 행사가격 · 행사기간 등 행사조건, 받을 주식의 현재시가 등 명세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등록할 재산의 가액 산정방법과 표시방법,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별로 재산의 취득일자 · 취득경위 · 소득원 등을 기재~~하거나~~해야 한다. 이 경우 소명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재산 중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다른 등록대상재산과 구분하여 표시하고 그 법인에서의 등록의무자의 직위를 밝혀야 한다.

제5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①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보(轉補) · 강임(降任) · 강등(降等) 또는 퇴직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3년(퇴직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전보 · 강임 · 강등 또는 퇴직 등을 한 날 이후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변동사항 신고 이후의 변동사항을 신고함으로써 등록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최초 등록 또는 재등록 5년경과 후에는 재산내역전체를 재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9>

1. 국회의원과 그 밖의 국회 소속 공무원: 국회사무처
2. 법관과 그 밖의 법원 소속 공무원: 법원행정처
3.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헌법재판소사무처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5. 정부의 부 · 처 · 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등의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그 부 · 처 · 청
6. 감사원 소속 공무원: 감사원사무처
7.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국가정보원
8.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그 지방자치단체

9.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그 지방의회
10.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1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과 그 소속 공무원: 그 교육위원회
12.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그 공직유관단체를 감독하는 부·처·청.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등록한다.
13. 그 밖의 등록의무자,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처·청 소속 공무원과 감사원·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으로서 제10조제1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하는 공직자: 안전행정부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등록기관이 종전의 등록기관과 다를 때에는 종전의 등록기관의 장은 전보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람의 재산등록에 관한 서류를 새로운 등록기관의 장에게 이관(移管)하여야 한다. 등록의무자가 전보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지 아니하고 등록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등록기관 중 재산을 등록하여야 할 등록의무자의 수가 많아 등록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등록기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 중 일부를 등록기관으로 할 수 있다.

제6조(변동사항 신고) ① 등록의무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등록 후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 후 최초의 변동사항 신고의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퇴직한 등록의무자는 퇴직 후 1개월 이내에 그 해 1월 1일(1월 1일 이후에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퇴직 당시의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 후 1개월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만으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③ 12월 중에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은 다음 해의 변동사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퇴직자 변동사항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등록의무자가 1월 또는 2월 중에 퇴직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은 제2항에 따른 퇴직자 변동사항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④ 제2항은 제3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등록의무자 중 소속 기관·단체가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되어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 준용한다.

⑤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원회"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요청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신용정보 중 대출 잔액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이 동의할 때에는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위하여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부동산 보유·등기 및 과세정보(지적, 건축, 주택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공을 요청 받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⑦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제5항 전단에 따른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를 명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⑧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영수증 등(사본을 포함한다) 재산의 증감원인(增減原因) 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거나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⑨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와 제6항에 따른 부동산 보유·등기 및 과세정보에 관한 자료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등록사항의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의2(주식거래내역의 신고) ① 제10조제1항 각 호의 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등록의무자는 제6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 변동사항 신고 시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식의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주식거래 내용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거래내역 신고 시 신고대상 주식거래의 범위, 신고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식거래의 신고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신고사항의 심사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8조, 제8조의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제6조의3(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등) ①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제6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를 유예할 수 있다.

1. 법령의 규정에 따라 외국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
2. 법령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게 된 경우
3. 재외공관 또는 해외 주재 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로 제6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를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기관의 장은 그 명단 및 사유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1. 구금 등으로 신고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2. 실종 등으로 행방이 불분명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상당하는 사유로 사실상 신고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변동사항 신고를 유예받은 등록의무자는 그 유예사유가 소멸된 후 1개월 이내에 최종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 이후의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4(변동사항 신고의 범위와 내용)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재산상의 변동사항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과 제4조제3항제12호 중 골프회원권의 매매·증여 또는 공시가격 고시 등으로 인한 변동사항. 다만, 매매 등의 거래를 한 경우 실거래가를 신고하고 증여와 같이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거나 해당 연도에 거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가격 변동액을 신고하되, 공시가격 변동액이 이미 신고된 실거래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다.
2. 제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품목·수량·금액 등 증감한 변동사항. 다만, 제4조제2항제3호사목 및 아목의 재산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등록대상기간 동안 거래가 없는 경우 금액의 변동이 있더라도 변동액을 신고하지 아니한다.
3. 제4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출연재산의 구체적인 내용, 비영리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목적사업, 그 밖에 비영리법인의 세부적인 사항과 그 법인에서의 등록의무자의 직위의 변동사항

제7조(등록기간의 연장)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제6조제2항의 퇴직공직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8조·제10조·제12조·제13조 및 제24조에서 같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재산등록(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의무자는 연

장된 기간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된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가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빠트리거나 가액합산 등을 잘못 기재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의무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재산등록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등록의무자에게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에게 해명 및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기관·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보고나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할 수 없다.

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신용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와 그 배우자, 등록의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그 밖의 재산등록사항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진술을 받을 수 있다.

⑦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거짓으로 등록하였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⑧ 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조사의뢰를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檢事) 또는 검찰관에게 조사를 하게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검사나 검찰관의 조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군사법원법」을 포함한다) 중 수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신구속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또는 제6조에 따른 변동신고사항을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개한 후 3개월 이내에 재산공개대상 공직자 전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로써 심사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⑪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등록의무자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등록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⑫ 제11항에 따라 위임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를 하려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개대상자 및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할 때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재산의 소유자별 취득일자, 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이하 이 조에서 "재산형성과정"이라 한다)을 소명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소명내용에 대한 재산등록 기준일부터 과거 3년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⑭ 제13항에 따라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명 및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⑮ 제13항 및 제14항에 따른 재산형성과정의 소명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 결과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경고 및 시정조치
2.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3.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4. 해임 또는 징계(파면을 포함한다) 의결요청
5. 고발

② 제1항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인정하려면 등록된 재산과 등록에서 빠진 재산의 규모·종류 및 가액과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제3호의 조치는 다른 조치에 부수하여 함께 할 수 있다.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등록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조세 관련 법령의 경우에는 국세는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지방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보할 수 있다.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심사결과 공직자의 직무가 공직자 및 그의 직계존비속의 등록재산과 금전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거나 혹은 윤리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인정된다면 공직자에게 그와 같은 견해를 통보하고 의견청취의 기회를 부여한 후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처분을 결정하여 이를 공직자에게 명해야 한다.

1. 공직자의 회피, 전직 및 당해 직위의 해제
2. 이해 충돌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당해 재산의 처분
3. 백지위임신탁 등 기타 이해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⑦ 제6항2호 혹은 3호의 조치 중 인사와 관련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해충돌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인사권을 가진 소속기관의 장에게 명령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기관의 장은 한 달 이내에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게 통보해야 한다.

⑧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 6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보 또는 공보에 기재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일간 신문광고란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의원, 국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법관, 법원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재판관,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5.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광역시·특별자

치시 · 도 · 특별자치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시 · 군 · 구의회의원, 시 · 군 · 구의 4급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6. 시 · 군 · 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시 · 군 ·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시 · 군 ·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7.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교육위원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8.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직자 외의 공직자와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 · 군 · 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④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의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규칙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대법원규칙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규칙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5.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대통령령
6.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시 · 군 · 구 공직자윤리위원회와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할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⑥ ⑦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법과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

과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 및 제6조의2 주식거래신고내역을 등록기간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1-2.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전직 대통령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5.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6. 중장 이상의 장관급 장교
7.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위원
8.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지방경찰청장

8의2.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9. 지방 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10.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다만, 제4호·제5호·제8호 및 제9호 중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만 해당된다.
11.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직(職)에서 퇴직한 사람(제6조제2항의 경우에만 공개한다)

② 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 후 승진·전보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공개대상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개대상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시 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대상자가 공개대상이 아닌 직위로 전보되었다가 3년 이내에 다

시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최종 공개 이후에 변동된 사항만을 공개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누구든지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하여 열람·복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9>

④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7.29>

1.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의무자였던 사람에 대한 범죄수사 또는 비위(非違) 조사나 이에 관련된 재판상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회의원이 「국회법」 제128조제1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정감사·조사 등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의정활동으로서 특정 공직자가 구체적 비위사건에 관련되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재산등록사항의 전체 세부목록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3.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소속 공직자의 비위사건 관련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등록의무자이었던 사람이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제10조의2(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 ①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후보자등록을 할 때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공고 시에 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국회사무총장 등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직자의 임명동의안 또는 헌법재판소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등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자의 선출안을 제출할 때에는 그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그 공직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공직후보자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또는 그 이후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하여 해당 임명동의안 또는 선출안 제출 전까지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재산을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등록대상재산을 공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재산신고사항을 심사하여 심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심사에는 제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제13항 및 제14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서 서식,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전보된 사람 등의 재산신고) ① 등록의무자가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신

분을 보유하면서(퇴직 후 1개월 이내에 다시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보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았을 때에는 전보 등이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해 1월 1일(1월 1일 이후에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 이후 전보 등이 된 날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종전의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다음 해 전보 등의 사유가 생긴 달에 그 전 1년간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변동사항 신고 의무기간에 퇴직한 경우에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와 그 신고사항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제10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제12조(성실등록의무 등) ① 등록의무자는 제4조에서 규정하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람은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이나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등록사항의 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으며 3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등록의무자는 고지거부 사유를 밝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고지거부에 관한 허가신청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재산등록사항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 등록의무자는 허위등록이나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 등록된 사항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나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재산등록사항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비밀엄수)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2(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등록의무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3(금융거래자료의 제공 · 누설 등 금지) 제8조제5항에 따라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은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의2 주식 등의 매각 또는 신탁

제14조의4(주식 등의 매각 또는 신탁) ① 등록의무자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와,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 및 ,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교통국토부, 한국은행, 공정거래위, 대검찰청, 감사원, 외교부,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공개~~심사대상자 등~~"~~이라 한다)등 대상자는 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하되,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모두가 보유한 주식 및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주식 등” 이라 한다)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게 된 날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취득한 날(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제6조의3제1항 · 제2항에 따른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 현재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개대상자 등이 된 날 또는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을,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대상자의 경우 제14조의5제7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주식의 매각~~

1. 주식의 경우

가. 당해 주식의 매각

나. 당해 주식에 대한 신탁 또는 투자신탁(이하 "주식백지신탁"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의 체결

2.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가.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의 포기

나.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후 매각

다.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후 주식백지신탁

라.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의 양도권 취득 후 주식백지신탁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신탁 또는 투자신탁(이하 "주식백지신탁"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의 체결~~

② 제1항제1호나목과 제2호다목에 의한 주식백지신탁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가.~~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음 신탁된 주식 등을 처분할 것. 다만, 60일 이내에 주식등을 처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수탁기관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주식 등의 처분시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의 연장기간은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2. ~~나.~~ 공개대상자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 · 운용 · 처분에 관여하지 아니할 것

3. ~~다.~~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수탁기관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미리 신탁재산의 기본적인 운용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4. ~~라.~~ 제14조의10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탁자가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

5. ~~마.~~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할 것

6. ~~바.~~ 수탁기관은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일 것. 다만,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회사는 제외한다.

③ 제1항제2호라목의 경우 상법 제340조의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주식매수선택권부여 법인은 공개대상자등 또는 이해관계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함. 다만 공개대상자등 또는 이해관계자의 책임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손해를 보상해야 하며 손해보상의 범위는 주식매수선택권 처분으로 발생한 신탁재산에 한정하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 이전에는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④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함께 하는 경우 등록하여야 하는 주식의 종류와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포기하거나 주식을 매각한 날 또는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⑤ ~~③~~ ~~공개~~대상자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포기 또는 행사와 주식백지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로 인한 재산변동사항을 제6조 및 제11조에 따른 신고에 포함하여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⑥ ~~④~~ 제1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의 체결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그 신탁재산은 제6조 및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⑦ ~~⑤~~ 제1항에 따라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한 사실의 신고 및 공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신고사항의 심사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3항,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① 공개심사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직무관련성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주식백

지신탁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법관, 교육자, 주식 관련 금융전문가나 그 밖에 백지신탁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공캐심사대상자등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주식 매각의무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으려면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게 된 날(공캐심사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제6조의3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유예 사유가 소멸된 날 현재 주식의 총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캐심사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신고유예 사유가 소멸된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⑦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심사청구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결로써 심사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⑧ 주식 등의 직무관련성은 주식 관련 정보에 관한 직접적·간접적인 접근 가능성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⑨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주식 등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캐심사대상자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서면질의를 할 수 있다.

⑩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주식 등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단체 및 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단체 및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⑪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6(주식취득의 제한) ①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는 공캐대상자등과 이해관계자 중 어느 누구도 새로 주식 등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캐대상자등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제1항에 따라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에 상속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알게 된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주식등을 직접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그 주식등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및 직무관련성 심사에 관하여는 제14조의4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4조의5를 준용한다.

제14조의7(신탁재산에 관한 정보제공금지 등) ①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113조에도 불구하고 신탁업자 · 집합투자업자 · 투자회사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신탁재산의 관리 · 운용 · 처분에 관한 내용의 공개 등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으며, 신탁업자 · 집합투자업자 · 투자회사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의 정보 제공 요구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탁업자 · 집합투자업자 · 투자회사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신탁재산을 처분한 후 그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등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자가 이를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의무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해당 공개대상자등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 · 운용 · 처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8(신탁상황의 보고 등) ①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매년 1월 1일(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해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탁재산을 관리 · 운용 · 처분한 내용을 다음 해 1월 중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2월 중에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되었으면 다음 해의 관리 · 운용 · 처분에 관한 내용과 함께 보고할 수 있다.

②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신탁재산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가 되면 이 사실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를 신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통보시기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9(수탁기관에 대한 감독)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면 그 임직원에게 시정명령 또는 징계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감독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의10(주식의 매각요구 및 신탁의 해지) ① 주식백지신탁의 신탁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수탁기관에 신탁재산을 모두 매각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② 주식백지신탁의 신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수탁기관에 주식백지신탁계약의 해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식백지신

탁계약의 해지를 청구하여야 한다.

1. 제14조의8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매각요구를 받아 수탁기관이 신탁재산을 모두 매각한 경우

3. 퇴직 · 전보 등의 사유로 해당 공개대상자등이 공개대상자등에서 제외된 경우

③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되면 해지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사유 및 그 해 1월 1일(주식백지신탁이 설정된 해에 해지된 경우에는 주식백지신탁이 설정된 날)부터 해지된 날까지 신탁재산을 관리 · 운용 · 처분한 내용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백지신탁계약이 1월 중에 해지되었으면 전년도의 관리 · 운용 · 처분에 관한 내용과 함께 보고할 수 있다.

제3장 선물신고 및 금지된 선물의 처리절차

제15조(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① 공무원(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에서 같다)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하 "공직자등"로 한다)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 · 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들의 가족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할 선물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 (금지되는 선물 등) ① 공직자등은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어떠한 선물, 향응, 숙박, 여행, 회원권제공 등 일체의 금전적 이익(이하 선물 등)을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아서는 안 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익의 제공은 전항에서 제외한다.

1. 식사가 아닌 커피, 음료수 등 간소한 음식 또는 다과

2. 단지 전시를 위해 제공되는 트로피, 명패 등으로 경미한 가치를 지닌 물건과 인사장

3.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되는 대부

4. 일반 국민 또는 모든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유리한 조건과 상업적 할인 등의 기회와 이익

5.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경연이나 추첨에서 받게 되는 보상 또는 상품

6. 종전 직장에서 계속적으로 받게 되는 연금 기타 이익

7. 직무상의 불편부당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학 등 기관에서 수여되는 명예상의 학위 기타 자격

8.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선물

③ 제1항의 직무관련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 기관에 대한 일정한 작용 및 조치를 구하는 자

2. 소속 기관과 업무상 관계를 맺고 있거나 맺으려 하는 자

3. 소속 기관의 규제 대상인 자

4. 공직자등의 직무상의 권한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진 자

④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등도 공직자등이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1. 해당 공직자등의 부모, 배우자, 자녀 기타 친인척

2. 해당 공직자등의 지정, 권고 등에 따른 특정 재단 또는 단체

3. 기타 해당 공직자등의 지정, 권고에 따른 제3자

제15조의3. (금지된 선물들의 처리) ① 전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선물 등을 제공받은 공직자등은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상급자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전조에 의해 금지된 선물 등을 받은 자는 즉시 그 제공자에게 그 선물 등을 반환하거나 시장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그 시장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 물품의 소매가격을 시장가격으로 볼 수 있다.

③ 그 선물 등이 쉽게 소멸하는 것이거나 제공자 또는 그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으로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공직자는 그 소속기관의 상급자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 국고에 귀속시키거나 파기한다. 국고에 귀속된 선물 등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향응, 숙박, 여행 기타 무형의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제공자에게 그 시장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⑤ 반환 또는 보상에 따른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고 그 제공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의4. (공직자등 상호간의 선물 등) ① 공직자등은 상급자 또는 다른 공직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선물 등을 제공할 수 없다.

② 공직자등은 다른 공직자등의 부탁을 받아 상급자 또는 다른 공직자에게 선

물 기타 이익의 제공을 알선할 수 없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 제1항 및 제2항의 예외로 한다.

1. 수명의 공직자등 사이에 나누어 먹거나 사용할 수 있는 식품, 음료수 등
2. 결혼, 질병, 출산, 생일 등에 주어지는 의례적 선물 등의 이익
3. 퇴직, 사직, 전근 등 상하관계의 변동에 따른 의례적 선물 등의 이익
4. 주고받는 공직자등 상호간에 그 선물 등의 이익의 제공을 합당하게 만드는 개인적 관계가 있는 경우

제16조(선물의 국고 귀속 등)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선물은 신고 즉시 국고에 귀속된다.

② 신고된 선물의 관리 ·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의2. 이해충돌의 회피

제16조의2. (이해관계 직무로부터의 제척) ① 공직자등이 자신이 수행하는 특정한 직무가 자신의 경제적 이해와 연결되어 있음이 직접적이고 명백한 경우이거나 자신의 친족, 호주, 가족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가 제15조의2 제3항의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그 직무로부터 제척된다.

② 전항에서 특정한 직무라 함은 해당 공직자등의 재량행위, 결정, 또는 조치가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공직자등은 스스로 그 소속기관의 상급자에게 고지하고 허가를 얻어 그 직무를 회피할 수 있다.

제16조의3. (업무 외 취업제한)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임명권자에 의하여 보임된 직책을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회사, 조합, 기타 다른 영리법인에 부속되거나 고용되어 보상받는 행위
2. 그의 성명이 전호의 각 조직 및 기관에 의하여 사용되는 행위
3. 소속기관에의 사전통지나 승인 없이 보상을 받고 강의하는 행위

제16조의4. (업무 외 소득제한) ① 전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 외 활동으로 인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에도 그 업무 외 연소득은 연 급여총액의 15%를 넘지 못한다.

②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순수한 경제적 활동으로 인하여 얻는 개인소득은 위 소득제한금액에서 제외한다.

③ 전1항의 소득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명하지 못한 재산은 불법수익으로 본다.

제16조의5. (대부등의 제한) 공직자등은 직권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 재정보증 등 일체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제4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

제17조(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하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등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따른 법률」 제5조에 의한 시장형 공기업(이하 "기업체등"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으며 아래 7호의 경우에는 회사 등의 규모에 관계없이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본금과 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지난 3년간 연평균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공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일정 규모~~ 30억 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2. 제1호에 따른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3. ~~연간~~ 연평균 외형거래액이 30억 원 ~~일정 규모~~ 이상인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
4. ~~연간~~ 연평균 외형거래액이 30억 원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5. ~~연간~~ 연평균 외형거래액이 30억 원 ~~일정 규모~~ 이상인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6. ~~연간~~ 연평균 외형거래액이 30억 원 ~~일정 규모~~ 이상인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한 사기업체 혹은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실적이 있는 사기업체

8.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가 인수합병이나, 명의변경, 신규사업자 등록 등으로 이름이나 대표자가 변경되었으나 해오던 사업을 지속하는 사기업체

② 제1항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인 경우를 말한다.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 · 장려금 · 조성금 등을 배정 · 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 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생산방식 · 규격 · 경리 등에 대한 검사 · 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 조세의 조사 · 부과 · 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 · 검사 · 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 기업체등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 · 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8. 기업체등이 재산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정과 개정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9.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10. ~~8.~~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를 불문하고 사기업체등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사기업체등에 조언 · 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 · 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④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하였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등이 사건을 수임(「변호사법」 제3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임을 포함한다)하거나 회계법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세무사법」 제2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취업심사대상자가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는 해당 법무법인등이나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의 업무와 제1항에 따른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퇴직공직자의 자유 및 권리 등 사익과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한 공익 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제4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업 승인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경우에 해당 업무 처리 등의 건수, 업무의 빈도 및 비중 등을 고려하여 해당 취업심사대상자의 권리가 불합리하게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는 법무법인등에,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에, 「세무사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는 세무법인에 각각 취업할 수 있다. 다만,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차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의 직위에서 퇴직한 사람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⑦ 제1항의 경우 사기업체등의 규모 및 범위 등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①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17조제2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취업심사대상자가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받거나 제2항에 따라 취업승인의 신청을 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취업승인은 공직자가 기업체 등에 취업함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취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이해충돌로 침해되는 공익을 비교하여 그 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거쳐 취업을 한 경우에도 제16조의4에 의한 이해충돌 활동의 제한을 받는다.

제18조의2(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①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

② 등록의무자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사기업체등에 대하여 처리하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취급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관의 범위와 제3항의 승인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업무취급 제한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 제출) ①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퇴직 후 일정한 업무취급을 제한받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 후 1년간의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소속 사기업체등의 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업무내역서를 검토하여 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에는 퇴직공직자가 관여한 사건·사무 등 업무활동내역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업무내역서에 포함되는 내용과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①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공직자 등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각호에 해당하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호의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경과한 기간에 관계없이 해서는 안 된다.

1.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퇴직 전 소속기관의 직원을 상대로 한 청탁행위
2. 퇴직 전 소속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에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행위
3. 퇴직 전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쟁송행위의 대리
4. 퇴직 전 소속기관 및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을 일으키는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공직자등은 소속기관의 퇴직공직자로부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청탁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퇴직공직자등과 사적인 만남을 제외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접촉해서는 안 된다. 재산등록대상의 공직자

등은 퇴직공직자등과 접촉한 경우 주기적으로 만남의 형태와 목적을 보고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된 사항과 수사기관에 통보한 사실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이를 정기적으로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의 형식이나 방법 등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신고자의 신분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

⑤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신고로 인하여 소속 기관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5(재직자 등의 취업청탁 등 제한) ① 재직 중인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한 업무 중 제17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한 사기업체등을 상대로 하여 재직 중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취업심사대상자를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한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체등으로의 취업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 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한 사람이 있는 때에는 국가기관의 장(국회는 국회사무총장, 법원은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인에 대한 취업해제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인이 취업하고 있는 사기업체등의 장에게 해당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임 요구를 받은 사기업체등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기업체등의 장은 그 결과를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당인의 취업제한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다만, 해당 소송을 통하여 해임 요구 처분이 취소되거나

해임 요구 처분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의2(취업 여부 확인방법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 후 2년 동안 관련 사기업체등에의 취업 여부를 직접 확인하거나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그 점검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제한, 업무취급의 제한 및 행위제한 등과 관련하여 관련 사기업체등의 장에게 해당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기업체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의 업무활동내역 등이 보고된 경우 이를 관리하는 기관에 그 활동내역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그 활동내역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된 경우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5장 보칙

제20조(기획 · 총괄기관) 안전행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공개,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기획 ·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제20조의2(국회 등에 대한 보고)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 또는 해당 지방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하거나 제18조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취업할 수 있다고 통지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포함한다)와 감독, 그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위임규정)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장 징계 및 벌칙

제22조(징계 등)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사유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7.29>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조제1항(12월 중에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의 변동사항 신고에 관한 같은 조 제3항을 포함한다) · 제8항, 제6조의2 및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동사항 신고 또는 주식거래내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자료의 첨부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조제13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 대하여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4. 제8조제1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8조의2의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 재산과 직무의 이해관계충돌 또는 윤리문제 가능성이 인정되었으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5.~~ 제10조제3항(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등록사항을 열람 · 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한 경우
7. ~~6.~~ 제12조제1항(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위등록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한 경우
8. ~~7.~~ 제12조제2항(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등록사항 심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9. ~~8.~~ 제13조(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재산등록사항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경우
10. ~~9.~~ 제14조(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재산등록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11. ~~10.~~ 제14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2. ~~11.~~ 제14조의6을 위반하여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3. ~~12.~~ 제14조의7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 · 운용 · 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14. ~~13.~~ 제14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 · 운용 · 처분에 관여한 경우
15. ~~14.~~ 제14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백지신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16. ~~15.~~ 제15조를 위반하여 외국에서 받은 선물 또는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을 신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15조의2의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되는 선물 등을 받은 경우
18. 제15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된 선물을 신고하지 않거나 처리절차를 어긴 경우
19. 제15조의4의1항을 위반하여 공직자 상호간에 선물 등을 제공하거나 2항

을 위반하여 선물 등 이익의 제공을 알선한 경우

20. 제16조의2제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척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고지하지 않거나 이해관계직무로부터 제척하지 아니한 경우

21. 제16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 외에 취업한 경우

22. 제16조의4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 외 소득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23. 제16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권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 재정보증 등 일체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얻도록 한 경우

24. 제16조의6의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퇴직공직자의 청탁을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25. ~~16.~~ 제1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6. ~~17.~~ 제1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한 경우

제23조(시정 권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제1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기관의 취업심사대상자를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체등으로 취업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시정 권고에 따라야 한다.

제24조(재산등록 거부의 죄) ① 등록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등록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직선거후보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의2(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 공개대상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아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거짓 자료 제출 등의 죄) 공직자윤리위원회(제8조제11항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재산등록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등록기관의 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26조에서 같다) 또는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제8조제4항 및 제5항(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4조의5제10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각 기관·단체·업체의 장이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출석거부의 죄)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8조제6항(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무허가 열람·복사의 죄) 제10조제3항(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재산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비밀누설의 죄) ① 제14조(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사람이 공개된 재산등록사항 외의 재산등록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4조의3(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이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제28조의2(주식백지신탁 관여금지 위반의 죄) ①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14조의7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하거나,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임직원이 정보제공 요구에 응하면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14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의3. (신고의무 불이행의 죄) 고의로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선물을 신고하지 않거나 절차에 따라 반환 등의 처리를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의4. (대부제한 위반의 죄) 제16조의5를 위반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기업체등에 취업한 사람
2.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한 사람
3. 제1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을 상대로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한 사람

제30조(과태료) ①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의 업무를 취급한 사람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8조의2제1항제2호(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2. 제8조제13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람
3. 제8조제1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람
4.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기업체등의 장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에 취업한 사람
2.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
3. 제19조제2항에 따른 해임 요구를 거부한 사기업체등의 장

④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토론 1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대한 토론문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서론

이번에 공직자의 윤리 확보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그 개정안은 백지신탁 심사 대상자 확대, 재산공개 고위공직자의 경우 백지신탁 의무화, 변호사, 세무사 등의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취업을 허용하는 예외조항의 삭제, 취업제한 대상 기업을 사기업에서 시장형 공기업까지 확대, 재산등록·공개에서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 폐지 등이 그 주요 골자이다. 그런데, 이러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시도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직업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를 이유로 위헌이라는 주장이 곧잘 제기되곤 한다. 토론자는 헌법을 전공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에서 강화된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과연 직업선택의 자유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이러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떠받치는 헌법적 근거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헌법 제7조 제1항상의 공무원의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성과 백지신탁 심사대상자의 확대

1. 헌법 제7조 제1항과 전체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하여 공무원의 전체국민에 대한 봉사자성을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은 그 임용주체가 국민이고, 그 직무가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특정인이나특정의 당파, 계급, 종교, 지역 등의 부분이익만을 대표해서는 안 되고,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 자신의 사익을 위해 공직수행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국민은 국가권력을 이들에게 신탁한 주권자이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다'라고 할 때의 공무원과 국민의 관계는 정치적 의미에서의 대표관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관계가 단순한 노무적·사무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성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복적 봉사관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무원의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성에서 공무원의 성실의무, 충성의무, 청렴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있다.

2. 백지신탁 심사대상자의 확대와 공무원의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무원의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성에서 공무원의 성실의무, 충성의무, 청렴의무가 도출되는 것이고 이번의 공직윤리법 개정안이 백지신탁 심사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이러한 공무원의 성실의무, 충성의무, 청렴의무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적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즉, 특정분야 고위직 공무원들은 직무와 관련해 여러 고급정보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고급정보를 이용해 사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불릴 위험이 상존한다. 따라서 고급정보를 다루는 특정분야 고위직 공무원들의 직무와 관련한 재산을 백지신탁하게

하는 것은 헌법 제7조 제1항의 공무원의 전체국민에 대한 봉사자성에서 도출되는 성실의무, 충성의무, 청렴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합헌적 수단이 되는 것이다. 백지신탁 심사대상자의 범위를 직무와 관련된 고급정보를 이용해 사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불릴 위험이 있는 공무원에게로 합리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이러한 공무원의 성실의무, 충성의무, 청렴의무 실현을 위한 것인 한 여전히 합헌적 수단이라고 봐야 한다.

III. 공직 퇴직 후 취업제한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1. 직업선택의 자유의 의의과 내용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 직업선택의 자유란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로이 선택하고 이에 종사하는 등 직업에 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자유를 말한다. 직업에 관한 포괄적 자유로서의 직업선택의 자유는 크게 직업결정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로 나누어진다. 직업결정의 자유란 직종결정의 자유, 전직(轉職)의 자유, 직업교육장선택의 자유 등을 포함한다. 직업수행의 자유란 자신이 결정한 직업 또는 직종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개업, 계속, 폐업하는 자유를 말한다. 영업의 자유가 이 직업수행의 자유의 일부가 된다.

2. 기본권 제한의 한계로서의 과잉금지원칙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모든 헌법학자들에 의해 기본권 제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기본권 제한의

정당화근거 조항'이 아니라 기본권제한을 어렵게 만드는 '기본권제한의 한계 조항'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중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라는 부분에서 헌법학자들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 원칙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을 도출해낸다. '과잉금지의 원칙'이라 함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국가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원칙으로서 목적의 정당성·방법의 적정성·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 등을 내용으로 하며, 그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되면 위헌이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이다.

(1) 목적의 정당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의회의 입법은 그 입법의 목적이 헌법과 법률의 체계내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방법의 적정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하는 경우에 법률에 규정된 기본권제한의 방법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효과적이고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3) 침해의 최소성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의 제한조치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한 것일지라도, 보다 완화된 수단이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그 제한을 필요최소한의 것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4) 법익의 균형성

기본권의 제한이 여러 원칙들에 적합한 경우에도 기본권의 제한이 의도하는 정치·경제·사회적 유용성과 그 제한에 의하여 야기되는 국민적·사회적 손실을 비교형량하여 양자간에 합리적인 균형관계가 성립해야 함을 말한다. 즉 사적 불이익과

공적 불이익을 비교하여 규제함으로써 초래되는 공익이 보다 크거나 적어도 양자 간에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3. 적용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변호사, 세무사 등의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취업을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삭제하고 취업제한 대상 기업을 사기업에서 시장형 공기업까지 확대함으로써 국민인 퇴임 공직자들의 직업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37조 제2항이 밝히고 있듯이 모든 기본권의 제한이 곧 '위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했다고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과도한 제한일 때에만 위헌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내용에 과잉금지의 원칙의 네 가지 세부원칙들을 하나하나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입법목적이 변호사, 세무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이 퇴임 후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시장형 공기업에 취업함으로써 발생하는 전관예우의 병폐를 방지하는데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목적은 헌법이나 법률의 체계상 정당하다.

둘째, 방법의 적정성도 인정된다. 변호사, 세무사 등의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취업을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삭제하고 취업제한 대상 기업을 사기업에서 시장형 공기업까지 확대하는 '방법'은 '전관예우의 병폐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셋째,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 변호사, 세무사 등의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취업을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두는 한, 고위직 판사나 고위직 검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이들이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에 취업해 발생하는 전관예우의 병폐를 사실상 방지하기 어려운 것이고, 이러한 규제보다 더 경미한 방법이면서 '전관예우의 병폐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넷째,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이러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취업제한으로 침해되는 고위공직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으로 인한 사적 불이익보다, 이러한 취업제한으로 얻어지는 '전관예우의 병폐 방지'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4. 소결

그러므로 변호사, 세무사 등의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취업을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삭제하고 취업제한 대상 기업을 사기업에서 시장형 공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퇴임한 고위공직자들의 직업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합헌적 제한이다. 따라서 헌법상의 위헌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Ⅳ. 재산등록·공개에서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를 폐지하는 것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대다수 헌법학자들은 헌법 제17조의 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즉 프라이버시권의 내용으로 크게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 사생활의 자유의 불가침, 자기정보에 관한 통제권의 세 가지를 들고 있다. 그 중 첫째,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이란 공개하고 싶지 않은 난처한 사적 사항을 허락없이 공개당하지 않고, 개인의 명예나 신용을 공표당하지 않으며, 성명, 초상, 경력, 이미지 등 본인에게 고유한 속성인 '인격적 징표'를 허락없이 도용당하지 않을 권

리를 말한다. 둘째, '사생활의 자유의 불가침'에는 '사생활평온의 불가침'과 함께 '자유로운 사생활의 형성과 유지의 불가침'이 속한다고 본다. 그러면서 이 '자유로운 사생활의 형성과 유지의 불가침'이란 인간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사회질서나 헌법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자유로이 행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생활도 자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자유로이 형성하고 전개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셋째, '자기정보에 관한 통제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기 위해 자신에 과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자기정보에 관한 통제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를 함부로 침해당하지 않고,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유로이 열람하며, 자신에 관한 정보의 정정, 사용중지, 삭제 등으 ㄹ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 불복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한다.

2. 기본권 제한의 한계로서의 과잉금지원칙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제한될 수 있으나, 이러한 제한도 과잉금지원칙의 세부원칙 중 어느 하나에라도 위배되는 과잉한 제한이면 위헌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합헌적 제한이 된다.

3. 적용

재산등록·공개에서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를 폐지하는 것은 재산등록 및 공개대상 공무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하는 것인만큼, 공개대상 공무원의 직계존비속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된다. 그러면 이러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이 과잉한 제한인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재산등록·공개에서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를 폐지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입법목적은 직계존비속을 통한 재산등록 및 공개대상 공무원의 재산 은닉을 방지하자는데 입법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목적은 헌법 및 법률의 체계상 정당하다.

둘째, 방법의 적정성도 인정된다. 재산등록·공개에서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를 폐지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직계존비속을 통한 재산등록 및 공개 대상 공무원의 재산 은닉을 방지'라는 입법목적이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 '고위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를 통한 공무수행의 공정성 확보'는 직계존비속에게 고지거부권을 인정하는 한, 사실상 완벽하게 실현되기가 불가능하다. 고위 공직자들이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은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산등록·공개에서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를 폐지해야만 '고위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를 통한 공무수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고, 이러한 방법보다 더 경미한 방법으로서 '고위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를 통한 공무수행의 공정성 확보'를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넷째, 법익의 균형성이다. 재산등록·공개 대상 공무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까지도 등록·공개하게 함으로써 직계존비속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중 '사생활 비밀의 불가침'이 제한받아 발생하는 사적 불이익보다, 이를 통해 얻어지는 '고위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를 통한 공무수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이 더 무겁고 중요하기 때문이다.

4. 소결

재산등록·공개에서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를 폐지하는 것은 직계존비속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중 '사생활 비밀의 불가침'을 제한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정당한 공익적 목적을 위한 필요최소한 제한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이다.

V.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중 백지신탁 심사대상자의 확대와 의무화는 헌법 제7조 제1항상의 공무원의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성에서 도출되는 공무원의 성실의무, 충성의무, 청렴의무에 근거한 정당한 수단이며, 변호사, 세무사 등의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취업을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삭제하고 취업제한 대상 기업을 사기업에서 시장형 공기업까지 확대하는 것도 고위직 공무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합헌적 제한이고, 재산등록·공개에서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를 폐지하는 것도 직계존비속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중 '사생활 비밀의 불가침'에 대한 합헌적 제한이다. 따라서, 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위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토론 2

공직자는 국민의 공무원이어야 한다

이희우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소장

1. 들어가며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4월 3일 새로운 반부패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제롬 카위작(Cahuzac) 전 예산장관이 해외 비밀계좌 보유사실을 시인한 뒤 나온 것이다. 부패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공직출마를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도 뇌물, 리베이트, 횡령 등이 극심하여 체제를 위협하는 수준이라서 새로 출범한 시진핑 체제는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여러 설문조사결과를 통해 MB정권기간 동안에 부패가 더욱 심해졌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투명성기구가 선정한 2012년 부패뉴스의 1위부터 5위까지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뉴스[1]가 차지했다. 박근혜 정부는 장관후보자들이 부패문제로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인선도 다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범하여 정권초기 시간을 낭비하였다. 4대강 사업에서의 건설사의 담합에 관한 수사들이 진행되고 있어 총체적인 부실사건을 예고하고 있고, 조세회피처 버진아일랜드로

1) 부패뉴스 1위부터 5위는 다음과 같다. 1.이명박 대통령 친형 이상득 전 의원 비리로 구속, 2. 이명박 정부 4년간 공직비리 61% 급증, 3. 총리실, 정,재계,언론,시민단체 등 전방위 사찰, 4.이명박 대통령 멘토 최시중 뇌물로 구속, 5.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당시 9호선 사업자에 특혜의혹

한국에서 이전된 자산은 중국, 러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규모가 크며 약 870조 정도로 추정되고 있고, 공개되면 거대한 부패공화국의 실체가 들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부패문제에 대해 기존 보수언론들은 제대로 검증도 보도도 하지 못하며 비리공개 등 투명성을 통한 언론의 부패방지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다고 하는데 권력의 꼭짓점부터 부패에 대해 무감각하니 당연히 부패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부패척결은 권력자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정형화된 법은 현실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그 효과성이 의심받으며 더디게 쫓아가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부패척결을 위해 법 재개정 및 제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림> 정권의 하수인인가? 국민의 공무원인가!

2. 발제문에 대한 의견

「공직자윤리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모두 명칭에 어울리지 않는 나약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시급히 반부패, 청렴 관련 법제는 정비하고 체계화하여야 한다는 윤태범 교수의 의견에 동의한다.

공직자의 존립근거가 공직자 본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에도 전적으로 공감한다. 공무원 선서문은 아래와 같다.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2009년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라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신문 전면광고를 냈다가 수십 명이 징계되고 십여 명이 해직되는 아픔을 겪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문제가 점점 심각한 상황이라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국정원 공무원들(대리인)의 주인은 전체국민이 아니라 일부 정당을 비롯한 집권세력(정권)이였다는 것이 전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다. 대리인인 공직자가 주인인 국민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발제자는 미국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를 자세히 소개하였다. 그러나 법체계는 잘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이해충돌문제는 빈번히 발생하는 것 같다. 한 가지 예를 들면 2008년 광우병 관련하여 전수조사를 하겠다던 농장주의 요청을 막아버린 미 농무성 고위관료(관련협회 출신)가 보여준 이해충돌 문제[2]와 로비활동이 합법화 되어 있는 미국 상황에서 법체계가 잘 되어 있어도 현실에선 이해충돌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참여연대의 개정안에 대해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공직자의 청렴의무조항의 삽입은 「공직자윤리법」이란 제목만 생각한다면 당연히 들어가야 할 내용이지만, 부패방지법의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3]와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4], 그리고 이 법 제8조를 근거로 한 각각의 헌법기관별 '공직자

2) 광우병소로 촉발된 한국의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2008년 5월 미국의 CNN에서 미국 내 광우병 검증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두 가지 보도를 내놓았다. 첫째는 미국의 한 농장주가 동아시아 등 해외 소비자의 안전성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광우병 검사를 모든 육류 가공에 확대해 달라는 요청을 연방항소법원에 했고 연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검역 확대 허용판결을 내렸는데 부시행정부가 검역확대는 국민 불안을 조장한다며 법원에 항소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미국의 식품 안전 검역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일선감독관의 부족, 전직 쇠고기판매업자나 협회 관계자들이 대거 미 농무성 고위직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쇠고기 판매업자들의 강력한 로비활동으로 검역체계의 객관성 담보가 힘들다는 내용이었다. 결국 일부 축산업자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먹거리 안정성에 제동을 걸은 것으로 생각된다.

3)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

행동강령'(대통령령)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복문제는 발생하게 된다. 물론 구체적인 행동강령은 대통령령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도 행정부가 수정할 수 있다는 문제는 있다[5]. 윤태범 교수 말대로 「공직자윤리법」과 부패방지법 등이 이원화된 것으로부터 초래했다고 본다.

재산등록·공개 대상자로 전직대통령 포함, 등록방법을 강화하고 5년경과후 재등록조항, 주식거래 공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사무국설치, 고지거부조항 폐지 등에 대해 이견이 없다. 특히 재산등록·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렸던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예외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백지신탁제도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주식뿐만 아니라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도 백지신탁하도록 한 것에 대해 동감한다. 물론 백지신탁 대상자로 개별부처가 어떻게 선정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선물신고부분에선 신설하자는 제15조의 2(금지되는 선물 등) ①항은 ' 공직자 등은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어떠한 선물, 향응, 숙박, 여행, 회원권 제공 등 일체의 금전적 이익을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직무와 관련 없는 자까지 금지한다면 김영란법[6]에서처럼 대가성 유무와 상관없이 금지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징계부분이 호응해주어야 효과적이다.

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그동안 행정부에서 제정된 법률의 취지를 벗어나는 시행령을 만들어 입법취지를 무력화하는 사례는 많았다.

6) 공직 스폰서 관행을 막고 대가성을 입증해야 하는 뇌물죄의 한계를 넘자며,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은 법무부 반대로 핵심내용이 수정되어 누더기가 되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

구체적인 청탁이 없더라도 이런 향응은 이후 보답해야 할 짐을 지게 되는 것이므로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옳다. 삼성공화국의 스폰서 관리기술에 대한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에서 보았듯이 자본이 정치를 지배하는 유력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7]. 정경유착의 주요한 고리를 끊는 방법은 '대가성 유무와 상관없이' 일체의 금전, 향응, 숙박, 여행 등의 서비스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선물수탁범위를 공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으로 확대한 것, 금지된 선물 수탁시 시장가격으로 보상, 공직자 등 상호간의 선물금지 등의 개정안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

제15조의 2 ③에서 언급하는 '직무관련자'에 대한 설명은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정의)편에 1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선물', '향응' 등에 대한 용어정의가 더욱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 용어정의가 달라지는 것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해충돌관점에서 이해관계 직무로부터의 제척의 취지는 동감한다. 그러나 이 또한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에서 언급되고 있다. 국무회의 통과사항인 대통령령이 아니라 국회를 거쳐야 하는 법률로 만들어 행정부가 수정 및 무력화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그 역시 그럴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업무외 취업제한'조항은 현행 공무원법의 겸직금지조항[8]이 있어 중복되어 불필요하다. 특히 강의에 대해선 공직자행동강령 제15조(외부강의, 회의 등의 신고)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9]. '업무외 소득제한' 조항은 공무원의 업무와 상관없이

---

7) 과거 노무현대통령은 '이제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습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8)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9) 공직자행동강령 제 15조(외부강의, 회의 등의 신고) ①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 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개인적인 재산증식활동(재테크로서 저축, 부동산 등)마저도 금지시키게 함으로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재검토해야 한다. 제16조의 5의 '대부 등의 제한' 조항은 오히려 제3장 선물로 옮겨 삽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퇴직공직자 취업 및 행위제한 부분에 개정의견이 많은 것은 현행 조문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영하다. 2011년 저축은행 영업정지사태를 계기로 관료집단의 전관예우 문제가 다시 점화되었다.

취업제한 대상을 시장형 공기업까지 확대(제17조), 사기업체 규모의 기준을 낮춰 취업제한 대상확대[10](제17조), 변호사 등이 법무법인 취업을 허용하는 예외조항 삭제[11], 취업요구절차, 취업예외허용의 엄격성 강화, 업무연관성을 '부서'에서 '기관'으로 확대(제18조의4), 퇴직공직자의 행위제한[12](제18조의 4), 퇴직자접촉제한(제18조의 4), 윤리위 명령불복종에 대한 처벌신설 등(제22조) 에 개정의견에 동감한다.

사기업체 규모가 왜 자본금 10억/외형거래액 30억 인지 객관적인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자본금기준이 아니라 정부와 거래를 하거나 정부용역에 입찰을 하거나 정부와 쟁송을 하는 업체로 정하면 안 되는지 알고 싶다.

취업심사 결과 공개에 대한 조문이 삽입되었으면 한다. 이미 국회에 개정안[13]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 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 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10)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자본금이 50억 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150억 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인 것을 자본금 10억, 외형거래액 30억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제시됨

11) 「변호사법」에 관련 조항이 있다("1+1"업무제한(cooling off)제도. 제31조(수임제한) ③ - 공무원직에 재직한 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동안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건당사자가 「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2011.5.17>

12) 취업자체를 제한하는 형태보다 취업은 허용하고 활동을 제한하는 형태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퇴직 후 직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부여하게 됨

13) 이 사항은 '12.11.21 전순옥의원이 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내용이다.

이 올라와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승인이 난 경우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부처별 집계결과는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18조의4 ②에는 현직 공직자가 재산등록 대상 퇴직공직자와의 모든 접촉을 보고해야 한다. 이러면 사적인 만남까지 단절되게 되고 결국 퇴직공직자는 자신의 인간관계의 많은 부분을 상실하고 우울한 노년을 보내야 한다. 도입한다면 기간을 한정하든지, 직무관련 사기업체나 로펌에 취업이 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개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3. 기타의견

한편 공무원도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 공익을 위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그 제한이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14]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해 두면서 개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재산등록·공개 및 퇴직후 취업제한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사전에 일정주기로 실태조사를 하여 얼마나 이해충돌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조사하고 그 결과를 두고 논의를 거쳐 기본권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적정선(부처, 직무분야와 직급)을 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새롭게 제안한 '업무외 소득제한'조항은 과도한 기본권침해인지 재검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에 삽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와 거래하거나 용역입찰에 참가하거나 정부와 쟁송을 하는 경우 해당 사기업체에게 퇴직공무원(퇴직후3년이내)의 존재, 그가 맡은 업무 등을 거래서류, 입찰서류, 쟁송과정에 제출서류에 기재를 강제하는 것도 이해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한가지 방법이다[15]. 「공직자윤리

14) 헌법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법」에는 현직자 및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다보니 로비 수요자인 사기업체에게는 별도의 의무조항이 없다. 기껏해야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를 퇴직자 스스로 작성하고 사기업체의 장의 확인을 거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 전부이다.

법이 꾸준히 개정되어 왔음에도 부패인식지수(CPI)가 별반 나아지지 않은 것은 법만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국회의원 등 정치인, 그리고 검찰 순으로 조사된다. 이들 대부분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면서도 견제 받지 않는 집단들이다. 견제는 외부견제와 내부견제가 있다. 외부견제는 정부-시민사회의 균형성 및 언론의 독립성, 행정의 투명성 등이 담보되어야 하고 내부견제는 정부-노동조합간의 균형성 및 공익제보자 보호시스템, 내부의 자유로운 여론이 필요하다.

특히 내부견제의 경우 결재권자인 고위공무원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 하위직공무원들은 거부하기 힘들다[16]. 부당한 지시의 거부는 곧 왕따나 인사차별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더욱 안전행정부는 2009년 공무원 복무규정을 고쳐서 집단으로 국가의 정책을 반대할 수 없도록 개정하여[17]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정책비판을 할 수 없도록 입을 봉한 셈이다. 공무원 개인은 정책을 반대할 수 있다고 하지만 단체가 아닌 일개의 개인은 해임을 각오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하위직 공무원은 무뇌아처럼 시키는 대로 집행하라는 것이다.

동료와 상사 및 하급자가 부패감시자로 존재하고 행정절차가 투명하고 노동조합의 순기능을 활용한다면 공직사회내 부패는 많이 감소할 것이고 퇴직공직자의 로비 또한 무뎌질 것으로 생각된다.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들어오면서 직업공무원제가 흔들렸고[18] 공무원의 신분불안을 야기하면서 퇴직후 취업을 고민하게 된다. 현직에서 부터 몸값 올리기 경쟁을

15) 퇴직공무원의 명단은 담당자가 업무가 끝날 때까지 직무와 관련해서 만나서는 안 되는 명단이 된다.

16) 물론 공무원행동강령의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에서 관련사항을 언급하고 있다.

17)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생략) ②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집단·연명(連名)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정책의 수립·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18) 고위공무원단에 들어가서 1년간 보직을 맡지 못하면 자동으로 해임되게 된다.

하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역작용으로 정경유착이 조장되어 왔다. 조기 퇴직이 강화되면서 관련기관의 낙하산인사로 내려가든지 자신을 불러 줄 사기업체를 물색하게 된 것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퇴직한 고위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과 공적인 일자리(교육원, 연구원, 해외지원, 정부지원의 컨설팅)를 만들어 퇴로를 열어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4. 마치며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는 1995년부터 10점 만점에 4~5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반부패 관련법들은 조금씩 재·개정되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부패법의 실효성이 낮다는 것을 반증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법과 제도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외부견제와 공직사회 내부견제, 공무원들의 윤리의식강화 등이 함께 이루어질 때 부정부패가 줄어들 것이다. 또한 대통령, 대기업회장 등 정치·경제 권력의 핵심 지도층부터 모범을 보일 때에야 비로소 국민들은 공직사회에 신뢰를 보여주기 시작할 것이다.

대통령, 국회의원, 검사, 고위공직자 등 사회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하는 것이, 즉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더 높은 도덕성과 더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는 것이 법과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그럼으로 해서 부패한 공직자는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의식을 심어주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본다.

과거의 공직사회는 거의 군대 조직이였다. 하급자에게 반말에 욕, 심지어 재떨이까지 날라다녔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생기고 나서는 반말이나 욕은 거의 없어졌다. 내부정화가 시작된 것이다. 내부 여론을 무서워하면서 고위공무원들이 눈치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투명하지 않은 곳에서는 비리가 일

어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공무원노동조합도 공직 내 투명성을 개선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반부패 법안들도 시급히 정비하고 체계화하여야 해야 한다. 이후에 반부패관련 법을 다 모아서 놓고 법률개정의 효과도 따져보면서 종합적으로 반부패법제의 개정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토론 3

현장 토론

김민재 / 안전행정부 윤리담당관

토론 4

공직부패의 사전 차단을 위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을 중심으로

안준호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장

Ⅰ. 법률 제정의 필요성

1 부패행위 통제의 사각지대 보완

○ **새로운 유형의 부패에 대한 통제장치가 미비**

- 국민의 기대수준 상승, 부패행위 판단기준의 변화로 전별금, 스폰서 등 종래 **온정·연고주의 사회의 관행이 부패로 인식**
- 자녀 취업보장, 학비대납, 장학금 지급, 고액 임대차 계약, 특허 공동등록, 용역발주 등 **부패행위가 은밀화·고도화**
- **왜곡된 민·관 거버넌스**(Bad Governance)가 부패유발 요인으로 작용

※ 각종 심의위원회 참여인사가 특정업체의 청탁대가로 금품수수, 내부정보 유출,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공기관에서 용역수주 등 빈발

○ 기존의 반부패 관련 법령이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되고,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운영

※ **「권익위법」**: 부패행위는 정의에서 개념만 개략적으로 규정되고, 권익위 설치·운영 및 부패방지 정책수립, 부패행위 신고사항 처리절차 중심으로 규정

「공직자윤리법」: 적용대상을 재산등록의무자(4급이상 등)로 한정하고 있고, 재산신고, 퇴직자 취업 및 행위제한 등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규정

「공무원 행동강령」: 16개 금지행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선언적 금지수준에 불과하고 처벌규정 및 관리방안이 미흡

2 온정·연고주의와 결부된 청탁관행 차단, 선의의 공직자 보호

○ **연고관계 또는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의 직무에 대해 **부정청탁**하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 공무원의 직무가 왜곡되는 폐해 근절

○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에게 청탁사실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청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절차준수 시 벌하지 아니함으로써 **선의의 공직자 보호**

3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종합 관리장치 강구

○ 공직 진입부터 퇴직까지의 사적 이해관계 사전신고 및 공개, 회피의무화 등을 통해 **공직과 의사결정 과정에 사익개입 소지 차단**

※ 신규임용 고위공직자에 대해 민간기업 재직 시 이해관계를 사전에 신고

○ 업무수행시 **가족과 연고단체 개입 차단**, 부패유발 소지가 있는 외부활동 제한, 공직을 이용한 재산증식 등의 사익추구 방지

4 금지행위에 대한 다양한 실효성 확보장치 강구

○ 공직자가 공직을 사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각종 처분·계약 등의 **중지·취소, 부당이익 환수** 등의 근거 마련

○ 금지행위의 형식적 운영 방지를 위해 의무위반 시 **징계, 과태료 또는 형벌 등 제재장치** 구체화

※ 「공무원 행동강령」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처벌규정 신설이 어려운 상태

5 OECD 선진국에 걸맞는 공직자 행위기준 도입

○ **법률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연계**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와 OECD 선진국 수준에 걸맞는 공직자 행위규범과 기준을 구체화

○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OECD 선진국**들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여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를 엄격히 관리(미국 '62년, 캐나다 '06년, 프랑스 '13년 제정 추진중)

Ⅱ. 추진 경과

○ **국무회의** '공정사회 구현,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 확산방안' 보고 시 **입법 필요성 제기**('11. 6. 14)

○ **제1차 공개토론회 개최**('11. 10. 18) : 입법 필요성 및 방안 제시

○ **제2차 공개토론회 개최**('12. 2. 21) : 조문별 토론

○ **권익위 전원위원회 법안 심의·의결**('12. 3. 19)

○ **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지원 연구 실시**('12. 4월~7월)

※ 공직부패 종합대책법으로서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대한 분석연구 발간 ('12.7.30)

○ **권역별 대국민 법안 설명회 개최**

(광주 '12.4.23, 대전 '12.4.24, 부산 '12.5.2)

○ 참여연대, 홍사단 등 5개 **시민단체 토론회 개최**('12. 6. 21)

※ 반부패 시민단체, 18대 대통령선서 반부패 정책공약으로 '부정청탁금지법' 제정 요구 ('12.10.10)

○ **정부입법절차 진행**('12. 5. 7.~)

- 관계 기관 의견 조회('12. 5. 7~5. 18) 및 협의('12. 5월 ~ 계속)
- 대국민 입법예고('12. 8. 22~'12. 10. 2)
- 정책통계기반평가('12.8.29), 성별영향평가('12.9.11), 부패영향평가('12.10.2)

○ **새정부 국정과제**에 포함('13. 2월)

※ 국정과제 138번(**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익추구 금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추진

Ⅲ.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주요 내용

1 부정청탁의 금지

□ **부정청탁의 개념**(입법예고안 제2조제5호)

○ **'부정청탁'** : 특정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 또는 알선 행위

※ 다만, 직무에 대한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해 확인·문의하는 행위, 고충민원 등의 해결을 요구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의견조회·자료제출을 요구에 따라 의견 등을 제출하는 행위 등은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 (입법예고안 제8조제3항 각 호)

□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입법예고안 제8조, 제34조)

○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에 대하여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로 제재**

- **이해당사자**가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1천만원↓과태료)
- **제3자**가 공직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2천만원↓ 과태료)
- **제3자인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3천만원↓ 과태료)

※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일에 대해 직접 부탁, 청탁하는 것은 공공기관과 국민의 의사소통 확보의 차원에서 제재대상 부정청탁에서 제외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입법예고안 제9조, 제33조제2항제1호)

○ 공직자가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2년↓징역, 2천만원↓벌금)

□ **부정청탁 신고·처리 절차 규정**(입법예고안 제10조)

○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부정청탁이 거듭 반복되는 경우 **소속기관장등에게 신고** 등 **처리절차 마련**

- 소속기관장 등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 감독기관·수사기관·권익위에 신고

○ **부정청탁 여부 및 처리방법**에 대해서 **소속기관장에게 상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정청탁의 효과적인 방지를 위한 자문·상담 기능 확충

2 금품등 수수 금지

□ **공직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입법예고안 제11조, 제32조, 제34조제4항제1호)

○ **직무상 관련여부 및 기부·후원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공직자가 사업자등이나 다른 공직자 등을 포함한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체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 위반 시 형벌·과태료로 제재

※ 다만, 통상적인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일정금액 이하의 금품,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친족이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조금품·치료비·주거비 등, 친구 등 특별한 연고관계에 있는 자가 제공하는 경조금품 등은 허용

○ **공직자의 가족**이 금지된 금품등을 받은 경우, 공직자가 이를 알았음에도 제공자에게 반환, 소속기관장에 신고·인도 등 처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 자신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와 동일**하게 제재

○ 누구든지 공직자에게 금지된 금품등을 **직간접적으로 기부·후원**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공·약속** 또는 **제공의 의사표시** 금지

□ **금지된 금품등에 대한 처리절차 마련**(입법예고안 제14조)

○ 공직자가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받은 경우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하고 소속기관장등에게 **신고**

○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장등에게 인도**하고 소속기관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 소속기관장등은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내역을 기록·관리

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 수행 금지**
(입법예고안 제15조, 제16조)

○ 공직자가 **자신 또는 가족,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을 금지하고,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 담보

○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지자체장, 공공기관의 장 등 고위공직자가 신규로 임용되는 경우 **민간부문 재직 시 이해관계**를 **신고,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에 **일정기간 참여 금지**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외부활동 제한**
(입법예고안 제17조)

○ 공직자가 직무권한과 관련된 **사업 또는 영리행위**를 사실상 관리·운영하거나, 사업자등에게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 **금지**

□ **사업자등과의 거래 제한**(입법예고안 제18조)

○ 공직자가 특정직무와 관계되는 사업자등으로부터 **금전을 차용·대부**하거나,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등 부정한 거래를 통해 **재산증식을 도모**하거나 **편법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하는 행위 금지

□ **소속기관등에 가족 채용, 계약 체결 금지**
(입법예고안 제19조, 제20조)

○ 고위공직자 및 인사담당자가 자신의 **가족**을 **소속기관에 채용**하거나 **고위공직자 및 계약담당자 및 그 가족**이 소속기관 **조달계약의 상대방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

○ **공개경쟁 절차**에 의한 경력직 공직자 채용이나 계약체결은 허용

□ **예산·공용물 등의 사적사용 금지**(입법예고안 제21조, 제22조)

○ 공직자의 희박한 공·사 구분의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행적인 예산·공용물의 사적인 사용**을 **금지**

□ **미공개 정보의 이용 금지**(입법예고안 제23조)

○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부동산 개발정보, 금융관련 정보, 단속정보** 등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금지

4 위반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 **위반행위 신고 접수기관**(입법예고안 제25조제1항)

○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하여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가능

□ **신고의 오·남용 방지장치 도입**(입법예고안 제25조제2항・제3항)

○ **허위신고 및 부정목적 신고금지**, 이를 위반한 경우 보호대상에서 제외

○ 신고방법 :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 취지·이유·내용을 기재한 **기명의 문서**와 함께 **신고대상 및 증거** 등을 함께 제출

□ **신고된 사항의 처리절차**(입법예고안 제25조제3항부터 제10항)

○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접수기관은 그 내용에 관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 필요한 조치를 취하

고 그 결과와 조치사항 등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다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수사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함

□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입법예고안 제26조)

○ 부정청탁을 신고한 공직자, 금지된 금품등을 신고·인도한 공직자 또는 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등에 대해서 **불이익조치 금지**, 그에 따른 **원상회복조치, 신분 비밀보호,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 보호장치 마련

○ 아울러,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 대해 보상금 지급

참 고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체계 및 주요 내용

목적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부정한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며,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익추구를 금지**하여 공직과의 **이해충돌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공직자의 청렴성을 증진**하고자 함

적용대상

(적용대상 기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

(적용대상자) 모든 공직자(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및 공무수행사인

※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등도 적용대상**

정의

- **부정청탁 :** 특정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 또는 알선 행위
- **금품등 :** 금전·유가증권 등 명목을 불문한 일체의 금전적 이익, 음식물 등의 접대·향응 또는 편의제공, 출장·행사에 소요되는 교통비·숙박비 등 경비, 사업자 등에게 취업 요구, 이권 개입으로 취득한 이익 등 모든 유·무형의 이익
- **이해충돌 :**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직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또는 저해된다고 보일 수 있는 상황

금지행위

부정청탁의 금지 등 (제2장)	금품등 수수 금지 등 (제3장)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4장)
▸ 부정청탁의 금지 (제8조)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제9조)	▸ 금품등 수수 금지(제11조) ▸ 사례금 수수 제한(제12조) ▸ 기부금 등의 수수 및 사용 제한(제13조)	▸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금지(제15조) ▸ 고위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금지(제16조) ▸ 외부활동의 제한(제17조) ▸ 사업자등과의 거래 제한(제18조) ▸ 소속기관 등에 가족 채용 제한(제19조) ▸ 소속기관 등과의 계약체결 제한 (제20조) ▸ 예산 등의 부정사용 금지(제21조) ▸ 공용재산·직위 등의 사적사용 금지 (제22조) ▸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제23조)

처리절차

▸ 부정청탁의 신고·처리(제10조)	▸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제14조)	▸ 제척·기피·회피 ▸ 사적 이해관계 신고·관리

▸ 처리절차를 준수한 경우 형사처벌 및 징계 등 처벌 제외

의무위반에 대한 실효성 확보장치

- ▸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마련(제25조)
- ▸ 부정청탁·금품수수의 처리절차상의 신고,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제26조)
- ▸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등의 중지·취소 및 부당이득환수 근거 마련(제27조, 제28조)
- ▸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징계·과태료 및 형벌 등 구체화(제31－제34조)

참 고 이해충돌방지 관련 국제적 동향

○ **UN반부패협약** (2003) : **공공부문의 부패예방**을 위하여 협약 당사국이 투명성을 증진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체계**를 채택·유지·강화할 것을 규정(제7조)

○ **OECD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 (2003) :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OECD **회원국에 이해충돌방지제도 마련**을 **권고,** 각국의 **이행상황을 관리**

- 2003년 :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 제정 및 회원국별 사례분석
- 2005년 :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 회원국에 권고 및 시행방안(Toolkit) 제시
- 2007년 : OECD 이해충돌 가이드라인 회원국별 이행현황 분석

○ **G20 반부패 행동계획** (2010):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선물수수**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제정**하고 **엄격하게 시행**할 것을 G20 회원국에 권고

○ **미국** :「**뇌물 및 이해충돌방지법**(Bribery, Graft and Conflict of Interest Act, 18 U.S.C.)」제정 (1962년)

-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은 **뇌물 및 이해충돌방지법**과 **정부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세부 운영절차는 **공직자 윤리행위기준**에서 규정
-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발전된 이해충돌방지 장치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처벌을 하는 등 엄격한 제도 운영

○ **캐나다** :「**이해충돌방지법**(Conflict of Interest Act)」제정 (2006년)

- 이해관계업무 참여금지, 이해충돌 유발 외부활동 제한, 친인척에 대한 계약발주 제한 등 공직자의 다양한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규정

○ **프랑스** :「**공직사회의 투명성 및 이해충돌방지법**(Law on transparency of public life and preventing conflict of Interest)」제정 추진 중 (2012년 현재)

- 공직사회의 청렴성, 투명성을 증진하고 공직자가 직면하는 이해충돌상황을 방지·관리하기 위한 입법 추진 중 ('11.10월 법률안 의회 제출 완료)
-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공개, 공직자의 주식거래 등 재정적 이해관계 관리 등을 통한 다양한 이해충돌방지장치 규정

○ **독일** :「**부패단속법**(Gesetz zur Bekämpfung der Korruption)」(1997년)

- **대가관계와 상관없이** 직무수행과 관련한 **금품등 수수 행위**를 이익수수죄로 규정하여 **형사처벌하는 등** 금품수수 등으로 인한 **이해충돌 상황 규제**

○ 이외에도 **영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대부분의 선진국뿐만 아니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몽골** 등 개발도상국들도 오래전부터 **종합적인 이해충돌 방지제도 구축·운영**을 통해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를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제고**

입법 토론회

공직자윤리법 전부개정안 마련을 위한 원탁토론

일시 | 2013년 5월 27일(월)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실
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실
한국투명성기구(TI)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